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발췌본) 이용 안내

1. 본 사업시행지침서(발췌본)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지원사업(용자사업 포함)에 대한 내용 중 우리 조합이 농기자재 관련분야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지침서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중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분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수행자가 정해진 사업이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등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3. 사업지침이 개정 중에 있는 사업은 지침서는 책자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개정 완료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아그릭스)에 게시되오니, 자료가 필요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시행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침서의 연락처나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시행지침서의 사업비, 지원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시행지침서의 상세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제 1 권

### [발췌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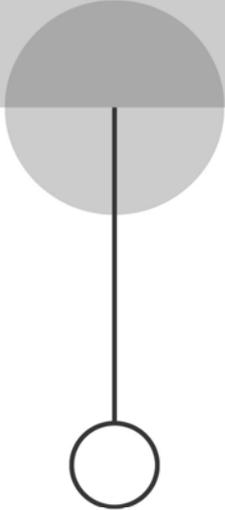
<b>I. 농기계 구입 및 생산 지원사업 주요내용 요약(2024) ....</b>	<b>1</b>
1.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	3
2.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	4
<b>II.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b>	<b>5</b>
- 불임자료(별표 - 관련지침 세부내용 참고)	
<b>III. 농업기계 생산지원 사업 .....</b>	<b>12</b>
- 불임자료(서식 - 관련지침 세부내용 참고)	
<b>IV.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업무 .....</b>	<b>15</b>

## ■ 농업분야 ■

□ 농업자금이차보전 .....	21
○ 농업종합자금지원 .....	25
-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사업 .....	30
○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	37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	83
□ 농기계임대 사업 .....	112
○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지원 .....	113
○ 주산지 일관기계화 .....	117
○ 노후농기계 대체 .....	119

## ■ 참고자료 ■

▶ 농기계보증제도 안내- .....	147
▶ 보증서 양식 .....	148



# I. 농기계 구입 및 생산 지원사업 주요내용 요약(2024)



# I. 농기계 구입 및 생산 지원사업 주요내용 요약(2024)

<b>1.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b>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 [별표 2]에서 정한 농업기계 -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는 2023.7.5. 이후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 있어야 함					
<b>가. 형식(모델)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간 용자판매 실적 없는 모델 정부지원에서 제외</li> <li>○ 민원발생(기계결함으로 인한 동일 모델에 대해 연 2회 이상)</li> <li>○ 위탁공급(OEM) 농업기계의 형식(모델) 관리 명확화 -생산업체가 제외되는 형식(모델)은 위탁공급(OEM)도 제외</li> </ul>				
<b>나. 사후관리(제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계신고시스템에 제조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임의개조 또는 변경 공급한 모델 적발 시 해당기종 전체 모델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li> <li>○ 국가나 지자체 보조사업에 공급한 기계가 민원발생(연 2회 이상)할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li> </ul>				
<b>다. 형식표지판 부착</b>	<p><b>* 의무부착(근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종 : 의무검정대상 42개 기종</li> <li>○ 제조번호 표기방법 제정 *세부내용 시행지침서 참고</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연도부호(R)</td> <td style="width: 25%;">형식명</td> <td style="width: 25%;">일련번호</td> <td style="width: 25%;">자체관리 번호</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착위치 : 본체 및 엔진</li> <li>    <b>*트랙터, 콤파인, 이앙기는 본체에 기대번호 각인</b></li> </ul> <p><b>** 의무검정대상 기종 외 기종의 형식표지판은 지침 별표4 준용</b></p>	연도부호(R)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 번호
연도부호(R)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 번호		

2.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가.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비축 : 자재 및 부품(외주가공비 포함)</li> <li>○ 생산시설 :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부지구입 제외)</li> </ul>
나. 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계 및 부품을 3년 이상 생산</li> <li>○ <b>최근 2년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b></li> </ul>
다.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자재 및 부품구입 평균이내,</li> <li>- 당해 연도 구입계획 90% 이내</li> <li><b>*중견기업 이상 1,000억원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b></li> <li>- 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li> <li>- 자금이용 기한 : 1년이내 상환</li> </ul> </li> <li>○ 생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기계설치비 30억원, 건축비 60억원</li> <li>- 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li> <li>- 자금이용기한 : 3년거치 10년 상황</li> </ul> </li> </ul>
라.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집행현황 제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 및 집행현황 등을 파악</li> <li>-익년도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자금 배정에 활용</li> </ul> </li> <li>○ 점검결과 목적 외 부당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지원 자금 회수</li> <li>- 제한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li> <li><b>*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름</b></li> <li><b>* 증빙금액은 지원받은 자금의 111%이상 구입해야 함.</b></li> </ul> </li> </ul>

## II.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별표 2]에서 정한 농업기계.
  -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는 2023.7.5. 이후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

### 2.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요건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한 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 제조업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항목이상을 갖추어야함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기계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자
  - \* 품목확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서류안내 : [www.kamico.or.kr](http://www.kamico.or.kr)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
- ③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와 관련된 KOLAS(한국제품인증), ISO, EU 및 기타 이와 동등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자

#### 2. 기타등록자(수입, 위탁판매업자(OEM공급자))

- 각 도\*에 소재한 중형 또는 대형 사후관리업소와 농업기계사후관리이행 협약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양식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중형 또는 대형 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 \* 경기도·인천·서울,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전라북도, 전라남도·광주,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부산·울산 각1개소 이상(직영 포함 최소 8개소 이상)

2) 농업기계사후관리이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제조, 수입, 위탁판매자 등이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못할시 사후관리 이행협약자는 내용연수에 4년을 더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함

- 부품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처분을 감수 함
- 단, 트랙터, 콤바인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의거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1개소 이상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함.

### 3.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한 자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 보증을 받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한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는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한국농기계유통합동조합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에 적합한 자
  - \* 한국농기계유통합동조합의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결과 사후관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공급자에서 제외

### 4. 농업기계 공급지역

-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을 공급지역으로 하며, 사후관리에 불편이 없는 경우 연접 시·군에 공급할 수 있음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신제품)

- 지원금리 및 용자기간 :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별표 1)
- [별표 2]의 용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판매 가격 이내
  - 신품(용자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전에 생산) 트랙터와 콤바인은「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하는 모델에 한정하여 지원
  - 자율주행농업기계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종별(지원규격별) 용자지원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용자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내
  - 용자지원한도액은 기종별 유사규격을 통합하여 설정하고, 실판매 가격이 낮은 경우 개별 형식별로 용자지원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기종별로 용자지원 상한액을 정할 수 있고,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단,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 제외).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

- 신기술 농업기계, 경제형농업기계,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농업기계 및 부품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는 용자지원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 \* 경제형 농업기계는 국내에서 생산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대상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농기계별 (지원 규격별) 용자지원한도액보다 5%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기계를 말함
  - \* 자율주행농업기계는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며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며, 공급되어있는 트랙터와 이앙기 등에 장착하여 운전자 없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농업기계 자율주행 키트도 포함 함
-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중 자부담분 용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을 합하여 상기 용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의 용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6. 세부사업 추진 및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관리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공급실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사항에 속할 경우에는 기종과 형식(모델)을 제외하도록 함
  -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2년 동안), 민원발생(기계결함으로 인한 동일 모델에 대해 연 2회 이상), 폐업, 1년이상 통신 및 주소지 불명(연락두절) 등의 경우
  - 농업인 피해 등이 우려되는 농업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별 용자한도액 관리

- 기종별·형식별(규격별) 용자한도액과 용자기간을 정함
- 기종별 용자지원한도액 상한액은 트랙터 130마력이상은 130마력, 이앙기 6조이상은 6조, 콤바인 5조이상은 5조, 조사료용 농업기계는 사료배합기로 적용하고, 기타 기종의 용자지원한도액 상한액은 유사기종의 용자한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위 규격의 용자지원한도액은 상위 규격의 용자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규격미달, 품질불량, 사후관리 불량 및 유통질서 문란 등의 물의를 일으킨 농업 기계의 경우 용자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관리

- 공급자가 품질불량 농업기계 공급, 검정규정 위반, 사후관리 소홀, 농업인 피해 및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농기계조합]

#### 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 관리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에 신규진입을 요청받은 경우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평가기준, 방법 등 평가위원회 운영요령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 관리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형식(모델)을 신규 등록, 형식(모델) 변경, 형식(모델) 공급중단 등에 대해 월 2회(5일,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매월 1~15일 접수분은 당월 20일 보고, 16~말일 접수분은 익월 5일에 보고)
- \*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가 기존 형식(모델)과 구조·성능·안전성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등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유화 진입 농업기체는 형식(모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자유진입기종 형식(모델)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구조변경 등을 점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시와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식(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가 구조변경 점검을 위한 조사 요청에 3회이상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체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되는 형식(모델)은 위탁공급(OEM) 농업기계의 형식(모델)도 제외한다.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등록 절차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1년마다(당해연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기종별 형식(모델)에 대한 용자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공급자]

-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용자신청 서류를 갖추어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 신청함
- 대출지원이 결정된 농업인은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1호 서식)를 대출취급사무소에 제출하고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농업기계 공급자 중 사후관리업자는 농업기계 공급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별지 3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확인서(별지4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함
  - 다만, 농업기계 공급자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농기계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함
    - \* 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78호)'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사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별표 4]에 따라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조번호는 기대관리 및 부정용자 예방 등을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농업용트랙터, 승용경운기, 승용이앙기, 콤팩트,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로더, 농업용 굴착기,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로타베이터 등 13개 기종)\*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월 10일, 25일 농협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로더, 심경로타리,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모우어, 사료배합기, 사료작물수확기
- 위탁공급계약(OEM)이 체결된 농업기계는 공급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번호를 통보받아 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함
- 농업기계에는 제조업자, 공급자 및 A/S 책임자의 상호,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함

## 7.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를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공급한 기종에 대해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공급받은 자도 동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용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농업기계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농업기계, 법 제9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한 경우
  - 공급자의 유통문란(농기계 가격 왜곡행위 등) 행위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제조·수입업자)의 행위로 보아 공급자와 제조·수입업자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사후검정 결과, 구조·성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임의 개조 또는 변경하여 공급한 모델은 동일기종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 기종을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후검정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모델을 포함한 동일기종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된 기종 또는 모델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사후검정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재진입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장이 사전 통보한 사후검정 기종에 대해 사후검정을 기피한 경우
  - 6개월 이상 통신 및 주소지 불명(연락 두절)등으로 사후검정이 불가능한 경우
  - 사후검정을 위한 재료(농업기계 등)를 요구하였으나 연속 3회 기피한 경우
  - 그 밖에 농촌진흥청 등 검정기관에서 협의하여 사후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공급하여 구조·성능 등 규격미달 등으로 민원이 발생(연 2회 이상)한 경우 공급한 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함. 또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판매(구입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한다.

붙임 자료(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지침 참고)

[별표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별 용자기간

[별표 2] 정부지원대상 진입요건 및 용자지원한도액

[별표 4]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사양

## Ⅲ 농업기계 생산지원 사업

### 1. 지원 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

- 농업인이 구입 사용하는 농업기계 및 이에 소요되는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2. 지원자금 용도

- 생산비축자금 : 농업기계 생산용 자재 및 부품(외주가공비 포함) 구입비
- 생산시설자금 : 농업기계 및 부품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 지원  
(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 3. 사업규모 및 지원형태

가. 총 사업비 : 300,000백만원(융자)

나. 지원형태

#### ○ 농기계생산 자재 구입 비축지원

- 사업규모 : 275,000백만원
- 지원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융자기간 : 1년 이내 상환(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 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설비지원

- 사업규모 : 25,000백만원
- 지원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융자기간 : 3년거치 10년 상환

### 4. 지원한도액 및 융자시기

-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지원 :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자재 구입계획 금액의 90% 이내  
(중견기업 이상 1,000억원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연도 구입계획의 90%이내에서 지원규모를 정함. 단, 기업규모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농기계 생산시설 설치 지원 : 기계설치비 30억원, 건축비 60억원까지 지원

· 다만, 중고농기계 수출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설매장, 전시장 등 설치비는 소요사업비의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중고농기계 수출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설매장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 설치지원 배정 후 잔액 발생시에는 생산원자재 구입 비축지원으로 변경 지원할 수 있음(단, 사업 예산 및 설치도면 등이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배정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에 시달

○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별 지원한도액을 승인

##### [농기계조합]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 [별표 1호] “농기계생산 자재구입 비축자금 배정기준”과 [별표 2호] “농기계 생산 시설 설비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신청업체를 평가하여 60점미만의 신청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확정 받은 후 대상 업체에 통보

- 선정심의결과서(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서 첨부)를 농식품부에 보고

##### [제조업체]

○ 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농기계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 5.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 위탁기관의 사후관리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

### [농기계조합]

- 농기계조합 이사장과 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은 사업추진 현황과 자금 집행현황 등을 연2회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 등을 파악, 익년도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자금 배정에 활용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 하여야 하며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종 판매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공급

## 6. 제재

### [농기계조합]

-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협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협은행에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재 요청 및 지원 제한 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붙임 자료(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지침 참고)

[별지1호 서식]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 배정신청서

[별표2호 서식] 농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 배정신청서

## IV.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업무

### 1. 관련 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

### 2. 대출대상 농업기계

####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중고농기계 포함)

- 아래 표에 열거된 20개 기종은 (별표 8)에서 정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농기계대출 신청 전에 제조번호가 농협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구분	대상 기종
본체(7개 기종)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농업용동력운반차, 승용경운기, 농업용 로더, 농업용굴착기 <b>*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본체에 기대번호 각인</b>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13개 기종)	베일러, 논두렁조성기, 베일피복기, 로더, 로타베이터, 모우어, 무논 정지기, 사료배합기, 사료작물수확기, 심경로타리, 퇴비살포기, 트레일러, 플라우

- 상기 이외의 농기계는 형식표지판을 준용하여 해당 농업기계의 특성에 적합한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함 (단, 제조번호는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대출 불가

### 3.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기계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대출한도

- 대출가능 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급시기(용자 전·후)에 관계없이 우선 차감
- 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금이 있는 농기계는 용자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대출 불가
  - ※ 정부의 용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 대출가능금액 산출 예시 ]

(단위: 천원)

사례	용자지원 한도액(A)	거래가격 (B) ※ 환급세액 포함가격		지자체 보조금(D)	대출가능금액 Min(A,(B-C))-D
		환급세액	환급세액(C)		
①	11,000	15,000	-	-	11,000
②	11,000	15,000	-	5,000	6,000
③	11,000	11,500	1,500	5,000	5,000

### 2. 대출제외 대상자 및 제외 농업기계

#### 가. 대출지원 제외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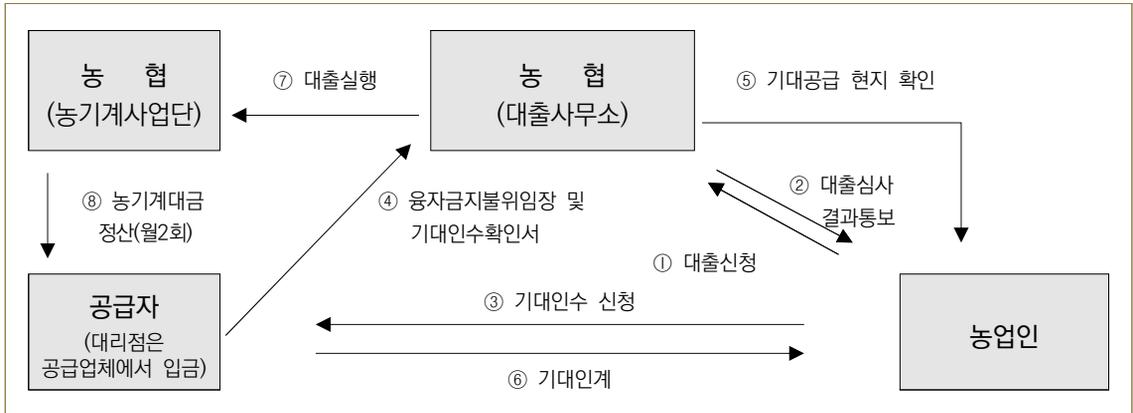
- 비농업 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외의 자) 및 신용관리 대상자, 연체채권 보유자 등은 대출지원 불가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 경영체
- 타인에게 사업 임대, 위탁 등을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조합원이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RPC·도정공장(단, 농림수산물부가 인정하는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 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축산업 미등록 또는 미허가 경영체

#### 나. 대출지원 제외 농기계

- 형식표지판 및 제조번호(기대번호)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농기계
  - 형식표지판 미부착, 훼손, 수기 작성, 제조번호 중복
  - OEM 공급농업기계는 공급업체에 위탁판매업체명이 표기되지 않은 농기계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 및 생산국가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이 표기되지 않은 농기계
- 트랙터 등 제조번호(기대번호) 사전등록대상 농기계 중 전산 미등록 농기계
-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등 서류 상 내용과 공급된 농업기계가 불일치한 경우(신청인, 기종, 규격, 형식, 공급업체, 수량 등)
- 농협에서 농기계 대출지원 결정 전 농기계 구입자에게 사전(선) 공급한 농기계

### 3.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절차

[ 농기계 대출 흐름도 ]



#### 가. 농기계 대출신청 및 심사방법

-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에 대출신청
- 대출신청자에 대한 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채무자의 기본자격, 신용정보조회 및 채권보전심사 등)
- 대출신청자로부터 제출 받은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현지 확인 후 대출실행.  
단, 대출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현지 확인 시, 농기계 사진 촬영하여 서류에 첨부

#### 나. 농기계 공급자 제출서류

사후봉사업소 공급의 경우	제조업체 직접공급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li> <li>○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li> <li>○ 농기계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농기계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는 인수자(농업인 등)에 게도 반드시 발급해야 함.</li> <li>○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확인서(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li> <li>○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li> <li>○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li> <li>○ 농기계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농기계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는 인수자(농업인 등)에 게도 반드시 발급해야 함.</li> <li>○ 사후관리이행보증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li> </ul>



# 애업분야





## 농업자금 이차보전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백만원)	557,722	
사업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등 용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	국고	100% 이차보 전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97,332	291,367	451,942
	국 고	297,332	291,367	451,94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금융부	안광현 사무관 류상현 팀 장	044-201-1760 02-2080-756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 사업내용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등 용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24년 예산 : 557,722백만원(이차보전금)

##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
- 신청기간 : 연중

## □ 대상자 선정

- 세부자금별 별도 적용

## □ 재해 지원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참고, '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044-201-1760
		주무관 방윤미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상현	02-2080-7561
		차 장 박정윤	02-2080-7568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장보 이수민	02-2080-7590 02-2080-7589
② 농업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02-2080-7590 02-2080-7586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전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첨단기자재종자과, (담당자) 이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96, 1897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kamico.co.kr](http://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경제과, (담당자) 이영은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1592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 (사업담당과) 식량산업과, (담당자) 노규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38, 1839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청년농육성정책팀 김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5, 1597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담당과) 농촌계획과, (담당자) 성순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9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정성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유통팀, 축산경영과 (담당자) 홍성현 사무관, 민동명 사무관, 홍석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18, 2323, 2338, 2339, 2340, 2341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박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5, 2334
  - **축산경영종합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민동명 사무관, 박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5, 2334, 2338, 2339
  - **인삼작물계열화(수매), 인삼계열화계약**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김동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38, 2239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경제과, (담당자) 정명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1585
  - **산지유통활성화** : (사업담당과) 유통정책과, (담당자) 정성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23, 2224
  - **특용작물계열화자금, 특용작물시설현대화(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포함)**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최수빈 사무관, 이남운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240, 2242, 2236, 2237
  - **온실현대화지원자금** : (사업담당과) 원예경영과, (담당자) 김승동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256, 2259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자금,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자금** : (사업담당과) 원예경영과, (담당자) 장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54, 2255
  - **해외 곡물망 확보 용자지원** : (사업담당과) 식량정책과,  
(담당자) 홍성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29, 1817
  - **사료구매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서주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59, 2360
  - **축산물 수급안정 자금(계란공판장출하촉진)** : (사업담당과) 축산유통팀,  
(담당자) 홍성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18, 2323
  - **축산물 수급안정 자금(송아지계약생산)**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정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2, 2333
  - **제분업계 경영안정 자금** : (사업담당과) 식량정책과, (담당자) 김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26, 1827
  - **쌀가루원료구매자금** : (사업담당과) 가루쌀산업육성반, (담당자) 조수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914, 2917
  - **외식업체육성자금** : (사업담당과)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강태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157, 2158
-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정책자금 상환연기 자금 등), 재해대책비는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 농업종합자금지원

## I. 사업개요

### □ 목 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 □ 사업내용

-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용자규모)

-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전통주 500억 포함), 천적 및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5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7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3,000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6,1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수리용 시설 설비

##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

\* 단,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은 대출대상자 선정·통지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선정 범위 내에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액 및 지원여부를 결정함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㉔-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라. 천적 및 곤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044-201-1751 044-201-176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㉔-2. 스마트팜 종합자금	가. 스마트팜 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과장 이정삼 사무관 강태원	044-201-2421 044-201-2419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㉔-3.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044-201-1751 044-201-176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정재환 사무관 박일수	044-201-2331 044-201-2335
		(사)한국양봉협회	총괄	전무 선문규	02-3486-0883
		(사)한국사슴협회	총괄	사무총장 최춘태	02-587-4343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변상문 서기관 이한병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장 김보람 사무관 권준엽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라. 기술창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과장 이정삼 사무관 권병철	044-201-2411 044-201-242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이정인 연구원 김지영	063-919-1470 063-919-147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㉔-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 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과장 문태섭 사무관 이현	044-201-1891 044-201-1896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장 장길수 차장 송동호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과장 이명은	02-2080-7575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 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과장 문태섭 사무관 이흥숙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이사 박춘근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㉔-5.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과장 최정미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이영은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여진 차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 II.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차차액을 보전함)
  -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차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 [공통사항]

-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단, 사업대상자를 비농업경영체로 하는 경우는 제외
    -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 또는 대출취급기관 전산시스템「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내용을 확인 및 출력하고 대출증서에 첨부
  -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5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 사업자는 예외)
-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 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 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 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 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 (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예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 ②-4-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및 농기계 해체재활용업 관련 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농기계해체재활용업소 등으로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용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 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 정부의 용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용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나.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지원사업
-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23.7.5. 시행>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신설로 인한 자금지원 필요)

###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 다.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라. 운전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마. 유의사항

###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되지 않은 농업기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2023.7.5.부터 시행)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용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기타사항(공통) >

- i)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ii)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 iii)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 Ⅲ.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 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대출대상자를 선정·통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통지기관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승인기간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 \* 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대출대상자를 선정·통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통지기관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및 연장여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 (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 IV. 평가 및 환류

###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I

##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기계 구입지원		예산 (백만원)	610,000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으로 농업인 등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농기계(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구입시 용자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농식품부가 인정하는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용자(2% 또는 변동금리 적용)						
사업 신청	○ 농기계 구입 용자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농협은행·지역농협에 신청 * 신청서류, 세부 신청절차 등은 해당 농협은행·지역농협에 문의						
지원대상 선정	○ 농업인의 용자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용자 시행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정액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 자	710,000	710,000	610,000	61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 현 주무관 이영동		044-201-1896 044-201-1897		
농협은행/지 역농협	정책자금대출 담당		농협 담당자		(농협은행/ 지역농협에 문의)		

###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3.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신제품 및 중고 농업기계의 구입

### 5. 지원대상 농업기계 및 사업량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 [별표 2]에서 정한 농업기계.
  -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는 2023.7.5. 이후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 있어야 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유류사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는 가동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함(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동시간계측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등록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한 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 제조업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항목이상을 갖추어야함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기계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자

\* 품목확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서류안내 : [www.kamico.or.kr](http://www.kamico.or.kr)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
- ③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와 관련된 KOLAS(한국제품인증), ISO, EU 및 기타 이와 동등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자

### 2. 기타등록자(수입, 위탁판매업자(OEM공급자))

- 각 도\*에 소재한 중형 또는 대형 사후관리업소와 농업기계사후관리이행확약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양식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중형 또는 대형 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 경기도·인천·서울,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전라북도, 전라남도·광주,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부산·울산 각1개소 이상(직영 포함 최소 8개소 이상)

\*\* 농업기계사후관리이행확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제조, 수입, 위탁판매자 등이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못할시 사후관리이행확약자는 내용연수에 4년을 더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함
- 부품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처분을 감수 함

- 단, 트랙터, 콤팩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의거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1개소 이상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한 자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한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는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한국농기계유통합동조합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에 적합한 자
- \* 한국농기계유통합동조합의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결과 사후관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공급자에서 제외

**농업기계 공급지역**

-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을 공급지역으로 하며, 사후관리에 불편이 없는 경우 연접 시·군에 공급할 수 있음

**공급 규모**

- 총 사업비 : 610,000백만원(용자)
- \* 지원액은 농기계구입지원 자금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품 농업기계**

- 지원금리 및 용자기간 :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별표 1)
- [별표 2]의 용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패매 가격 이내
  - 신품(용자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전에 생산) 트랙터와 콤파인은「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하는 모델에 한정하여 지원
  - 자율주행농업기계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종별(지원규격별) 용자지원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용자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내
  - 용자지원한도액은 기종별 유사규격을 통합하여 설정하고, 실패매 가격이 낮은 경우 개별 형식별로 용자지원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기종별로 용자지원 상한액을 정할 수 있고,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단,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 제외).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
- 신기술 농업기계, 경제형농업기계,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농업기계 및 부품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는 용자지원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 \* 경제형 농업기계는 국내에서 생산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대상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농기계별(지원 규격별) 용자지원한도액보다 5%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기계를 말함
- \* 자율주행농업기계는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며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업 기계를 말하며, 공급되어있는 트랙터와 이앙기 등에 장착하여 운전자 없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농업기계 자율주행 키트도 포함 함

-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중 자부담분 용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을 합하여 상기 용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의 용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중고 농업기계

- 지원금리 및 용자기간 :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거치 없이 균분상환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업기계 : 3년이내 상환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업기계
    - \*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이내 상환
    - \*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 이내 상환
- 용자지원한도액
  -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은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용자지원 기준표【별표 3】에 따라 지원 가능함.
  - 중고농업기계는 용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 기존 대출 잔액을 채무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까지 가능
    -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기계(신품·중고)구입자금을 받은 농업기계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 자금의 상환기한을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음(2022.12.11.부터 시행)
  - \* 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정책자금 및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등 세부사항은「자연재난 피해 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식품부 고시)」,「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을 따름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자금용도, 구입자금 용자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농협은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 시달(전년도 12월)

####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정부지원 용자를 포함한 보조사업의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에 제출(연중)

#### 농협은행

- 농협은행은 지원조건, 자금용도, 구입자금 용자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농협은행/지역농협 영업점(대출취급사무소)에 시달함(당년도 1월)
  - 부당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농업인 홍보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시달
  - 대출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농업기계는 용자절차를 간소화함

#### 지역농협

- 지역농협은 사업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및 부당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함(연중)

##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관리]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공급실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사항에 속할 경우에는 기종과 형식(모델)을 제외하도록 함
  -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2년 동안), 민원발생(기계결함으로 인한 동일 모델에 대해 연 2회 이상), 폐업, 1년이상 통신 및 주소지 불명(연락두절) 등의 경우
  - 농업인 피해 등이 우려되는 농업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별 용자한도액/용자기간 관리]

- 기종별·형식별(규격별) 용자한도액과 용자기간을 정함
  - 신기종 및 신규격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용자지원한도액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자지원한도액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정한다.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가 용자지원한도액 조정을 요청할 경우, 용자지원한도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적정성 검토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불인정
    - \* 농협은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은 농기계 구입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기종별 용자지원한도액 상한액은 트랙터 130마력이상은 130마력, 이앙기 6조이상은 6조, 콤팩트 5조이상은 5조, 조사료용 농업기계는 사료배합기로 적용하고, 기타 기종의 용자지원한도액 상한액은 유사기종의 용자한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위 규격의 용자지원한도액은 상위 규격의 용자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규격미달, 품질불량, 사후관리 불량 및 유통질서 문란 등의 물의를 일으킨 농업기계의 경우 용자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 관리]

- 공급자가 품질불량 농업기계 공급, 검정규정 위반, 사후관리 소홀, 농업인 피해 및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자 또는 승계인이 대표자의 성명, 상호명, 주사무소의 소재지, 형식명 등의 변경 요청 시 법령에 따라 조치
- 검정결과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검정성적서의 변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 관리]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에 신규진입을 요청받은 경우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평가기준, 방법 등 평가위원회 운영요령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기계 형식(모델) 관리]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형식(모델)을 신규 등록, 형식(모델) 변경, 형식(모델) 공급 중단 등에 대해 월 2회(5일,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매월 1~15일 접수분은 당월 20일 보고, 16~말일 접수분은 익월 5일에 보고)
  - \*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가 기존 형식(모델)과 구조·성능·안전성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등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유화 진입 농업기계는 형식(모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자유진입기종 형식(모델)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구조변경 등을 점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시와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식(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가 구조변경 점검을 위한 조사요청에 3회이상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되는 형식(모델)은 위탁공급(OEM) 농업기계의 형식(모델)도 제외한다.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등록 절차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1년마다(당해연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기종별 형식(모델)에 대한 용가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농업인, 농업기계 공급자

- 신제품 농업기계
-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용자신청 서류를 갖추어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 신청함
- 대출지원이 결정된 농업인은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1호 서식)를 대출취급사무소에 제출하고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농업기계 공급자 중 사후관리업자는 농업기계 공급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별지3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확인서(별지4호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함
  - 다만, 농업기계 공급자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농기계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함
  - \* 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9-78호)’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시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별표 4]에 따라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조번호는 기대관리 및 부정용자 예방 등을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농업용트랙터, 승용경운기, 승용이앙기, 콤팩트,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로더, 농업용 굴착기,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로타베이터 등 13개 기종)\*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월 10일, 25일 농협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로더, 심경로타리,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모우어, 사료배합기, 사료작물수확기
  - 위탁공급계약(OEM)이 체결된 농업기계는 공급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번호를 통보받아 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함
  - 농업기계에는 제조업자, 공급자 및 A/S 책임자의 상호,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함

□ 중고 농업기계

- 중고란 이미 사용하였거나, 장시간 미 판매된 제품(생산기준 24개월)을 말한다.[별표 3 참고]
- 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경우에는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함
  - 공급자 : 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 ②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③ 농협, ④ 시도 인가 중고농기계 관련 사업자 조합 소속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⑤ 중고농기계를 매도하는 농업인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은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와, 형식표지판이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수기로 작성된 경우와,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용자지원을 할 수 없음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은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할 때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1호 서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은 공급자로부터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별지3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확인서(별지 4호 서식)'를 징구하고, 농업기계 공급자가 제공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농업기계 공급자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농기계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징구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용트랙터, 승용경운기, 승용이앙기, 콤팩트,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와 트랙터용 부속작업기(쟁기 등 13개 기종) 구입자금 용자지원시 제조번호를 전산입력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통보한 제조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검색한 후 용자 실행한다.
  -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 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제조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용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2023.7.5.부터 시행)

###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용자시행으로 인한 이차액을 용자취급기관에 보전

### 4.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구입자금 지원현황(지원대상 농업기계, 용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및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감독하여야 함

#### 농협은행

- 농협은행은 연 1회 이상 지역농협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조사하여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농협은행은 부당공급에 관련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지역농협이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사실을 모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은 용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일로부터 용자금 상환일 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농협은행·시중은행본점이 정한다. \* 「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 작성은 사후관리 실태조사표(전산자료)로 같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가 건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 농가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유통질서 등을 문란하게 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대해서 조사·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한다.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유통·판매·사후관리 등 농기계구입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 농기계업계사후관리업소(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 포함)에 대한 사후관리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연도(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실적을 매년 8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
  - 사후관리 품질평가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조사 및 지자체에서 교부한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에 따른 사후관리업소의 사후관리 능력 등을 평가
  -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의 사후관리 품질평가 방법 및 평가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를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공급한 기종에 대해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공급받은 자도 동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용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농업기계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농업기계, 법 제9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한 경우

- 공급자의 유통문란(농기계 가격 왜곡행위 등) 행위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제조·수입업자)의 행위로 보아 공급자와 제조·수입업자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사후검정 결과, 구조·성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임의 개조 또는 변경하여 공급한 모델은 동일기종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 기종을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후검정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모델을 포함한 동일기종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된 기종 또는 모델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사후검정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재진입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장이 사전 통보한 사후검정 기종에 대해 사후검정을 기피한 경우
  - 6개월 이상 통신 및 주소지 불명(연락 두절)등으로 사후검정이 불가능한 경우
  - 사후검정을 위한 재료(농업기계 등)를 요구하였으나 연속 3회 기피한 경우
  - 그 밖에 농촌진흥청 등 검정기관에서 협의하여 사후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공급하여 구조·성능 등 규격 미달 등으로 민원이 발생(연 2회 이상)한 경우 공급한 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함. 또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판매(구입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모델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한다.

※ 제재를 위한 조사 및 소송 중일 경우 검정기관은 해당업체의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검정을 진행할 수 없음

### 농협은행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등이 용자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
- 농협은행은 부당공급에 관련된 농업인에 대하여 용자금 회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

-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은 농업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용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협은행에 통지해야 함

### 5. 성과측정단계

- 농협은행은 농업기계 공급 상황을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함

## IV 평가 및 환류

### 1. 사업평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농협은행은 해당연도 농업기계 용자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익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 및 농기계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

### 2. 환류단계

- 현지 확인, 농업기계 용자지원 실적 및 농기계 이용실태 분석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 V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해당 없음)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3년도와 동일함
3.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 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만 용자지원

(별표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별 용자기간**

기 중 명	용자기간	기 중 명	용자기간	기 중 명	용자기간
1. 농업용트랙터 ↳ 부속작업기	1년거치 7년상환 1년거치 5.4년상환	43. 농업용냉난방기	1 " 4 "	93. 사료배합기	1 " 5 "
2. 경운기 ↳ 부속작업기	1 " 5 "	44. 농업용동력운반차	1 " 5 "	94. 삭제(19.12.31)	
3. 삭제(19.12.31)		45. 농업용동력작업대	1 " 5 "	95. 송아지용자동포유기	1 " 4 "
4~5. 이앙기(보행, 승용) ↳ 부속작업기	1 " 4 "	46. 삭제(19.12.31)		96. 삭제(19.12.31)	
6. 콤팩트	1 " 4 "	47. 농업용로더	1 " 5 "	97. 수막난방용공급장치	1 " 4 "
7~8. 관리기(보행, 승용) ↳ 부속작업기	1 " 4 "	48. 농업용리프트	1 " 5 "	98. 스피드스프레이어 ↳ 부속작업기	1 " 5 "
9. 가동시간계측기	1 " 5 "	49. 농업용베일러	1 " 5 "	99. 신선도유지기	1 " 4 "
10. 가정용도정기	1 " 5 "	50. 농업용수처리기	1 " 4 "	100. 약취제거기	1 " 5 "
11. 삭제(19.12.31)		51. 농업용음이온발생기	1 " 5 "	101. 온습도조절기	1 " 5 "
12. 곡물건조기	1 " 7 "	52. 삭제(19.12.31)		102. 삭제(19.12.31)	
13. 삭제(19.12.31)		53. 농업용지주설치기	1 " 4 "	103. 삭제(19.12.31)	
14. 곡물선별기	1 " 5 "	54. 농업용콘베이어	1 " 4 "	104. 삭제(19.12.31)	
15. 삭제(19.12.31)		55. 농업용탑발제조기	1 " 5 "	105. 원거리용방제기	1 " 4 "
16. 곡물이송기	1 " 4 "	56. 농업용펌프	1 " 4 "	106. 삭제(19.12.31)	
17. 곡물적재함	1 " 4 "	57. 삭제(19.12.31)		107. 육묘상자세척기	1 " 4 "
18. 삭제(19.12.31)		58. 농업용환풍기	1 " 5 "	108. 육묘상자이송기	1 " 4 "
19. 과수인공교배기	1 " 5 "	59. 삭제(19.12.31)		109. 삭제(19.12.31)	
20. 과실수집기	1 " 4 "	60. 삭제(19.12.31)		110. 삭제(19.12.31)	
21. 삭제(19.12.31)		61. 동력배토기	1 " 5 "	111. 육묘용파종기	1 " 4 "
22. 농가용식물영양제조기	1 " 4 "	62. 동력분무기	1 " 5 "	112. 육묘묘자르기	1 " 5 "
23. 농산물건조기	1 " 7 "	63. 동력비닐수거기	1 " 5 "	113. 삭제(19.12.31)	
24. 농산물결속기	1 " 5 "	64. 삭제(19.12.31)		114. 삭제(19.12.31)	
25. 농산물교반기	1 " 5 "	65. 동력살분무기	1 " 4 "	115. 삭제(19.12.31)	
26. 농산물분쇄기	1 " 5 "	66. 동력살포기	1 " 5 "	116. 삭제(22.12.31.)	
27. 농산물선별기	1 " 5 "	67. 동력상토조제기	1 " 4 "	117. 자주형심토파쇄기	1 " 5 "
28. 농산물세절기	1 " 5 "	68. 동력수확기	1 " 5 "	118. 정전대전방제기	1 " 4 "
29. 농산물세척기	1 " 5 "	69. 동력연무기	1 " 4 "	119. 조사료수경재배기	1 " 4 "
30.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70. 예취기	1 " 5 "	120. 종자발아기	1 " 4 "
31. 농산물제피기	1 " 4 "	71. 삭제(19.12.31)		121. 삭제(19.12.31)	
32. 농산물줄기절단기	1 " 5 "	72. 정식기	1 " 4 "	122. 종자부착기	1 " 4 "
33. 농산물포장기	1 " 5 "	73. 동력제초기	1 " 5 "	123. 종자선별기	1 " 4 "
34. 삭제(19.12.31)		74. 동력중경제초기	1 " 5 "	124. 종자소독기	1 " 4 "
34-1.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75. 탈곡기	1 " 5 "	125. 삭제(19.12.31)	
34-2. 벼품위단백질자동판정기	1 " 5 "	76. 동력퇴비살포기	1 " 5 "	126. 축분고액분리기	1 " 5 "
34-3.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77. 농업용파쇄기	1 " 5 "	127. 축사용동력청소기	1 " 5 "
34-4.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78. 동력파종기	1 " 4 "	128. 축사용환경제어장치	1 " 4 "
34-5.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1 " 5 "	79. 마늘쪽분리기	1 " 5 "	129. 삭제(19.12.31)	
35. 삭제(19.12.31)		80. 무인자동방제기	1 " 4 "	130. 삭제(19.12.31)	
36. 농업용결속기	1 " 5 "	81. 무인항공방제기	1 " 5 "	131. 공정선기	1 " 5 "
37. 농업용고소작업차	1 " 5 "	82. 미생물배양기	1 " 4 "	132. 탈망기	1 " 4 "
38. 농업용고압세척기	1 " 4 "	83. 삭제(19.12.31)		133.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39. 농업용공기교반기	1 " 5 "	84. 삭제(19.12.31)		134.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 " 5 "
40. 농업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85. 버섯배지제조기	1 " 5 "	135. 삭제(19.12.31)	
41. 농업용굴착기	1 " 5 "	86. 버섯배지침포기	1 " 4 "	136. 휴대용전동가위	1 " 5 "
42. 농업용난방기	1 " 5 "	87. 삭제(19.12.31)		137. 휴대용전동적화기	1 " 5 "
		88. 버섯균분쇄기	1 " 4 "	138. 농업용탈수기	1 " 4 "
		89. 버직파기(전용형)	1 " 4 "	139. 양돈출하구역판정기	1 " 4 "
		90. 벧짚소독기	1 " 4 "	140. 탄산가스공급기	1 " 7 "
		91. 비닐하우스피복장치	1 " 4 "		
		92. 사료공급기	1 " 5 "		

주 1: 주행형분무기, 2: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 용자대출기간이 같은 농업기계를 동시에 구매할 경우에는 동일 건으로 처리 가능하고, 부속작업기를 본체와 같이 구매할 경우의 대출기간은 본체의 대출기간 적용 가능, 작업기를 본체와 같이 구매할 경우의 대출기간은 본체의 대출기간 적용 가능, 자율주행장치(농업기계 자율주행 키트)는 자율주행농업기계의 대출기간 적용 가능

[별표 2]

정부지원대상 진입요건 및 용자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용자지원 한도액
1	농업용트랙터 (보호구조물(ROPS)포함)	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퀴형(반케도형 포함)</li> <li>- 20마력(15kw)미만 10,210</li> <li>- 20마력(15kw)이상 25마력(18kw)미만 10,680</li> <li>- 25마력(18kw)이상 30마력(22kw)미만 11,070</li> <li>- 30마력(22kw)이상 35마력(26kw)미만 12,950</li> <li>- 35마력(26kw)이상 40마력(29kw)미만 16,270</li> <li>- 40마력(29kw)이상 45마력(33kw)미만 19,960</li> <li>- 45마력(33kw)이상 50마력(37kw)미만 24,330</li> <li>- 50마력(37kw)이상 55마력(40kw)미만 27,140</li> <li>- 55마력(40kw)이상 60마력(44kw)미만 32,450</li> <li>- 60마력(44kw)이상 70마력(51kw)미만 41,160</li> <li>- 70마력(44kw)이상 80마력(51kw)미만 46,530</li> <li>- 80마력(51kw)이상 90마력(66kw)미만 50,490</li> <li>- 90마력(66kw)이상 100마력(74kw)미만 55,850</li> <li>- 100마력(74kw)이상 110마력(81kw)미만 63,800</li> <li>- 110마력(81kw)이상 120마력(88kw)미만 65,800</li> <li>- 120마력(88kw)이상 130마력(96kw)미만 67,800</li> <li>- 130마력(96kw)이상 69,800</li> <li>○ 무한케도형</li> <li>○ (삭 계) 8,610</li> <li>○ 본체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700천원미만) 560</li> </ul>	
1-1	농업용트랙터용 베일러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통형</li> <li>- 드럼폭 100cm미만 9,200</li> <li>- 드럼폭 100cm이상 150cm미만 32,260</li> <li>- 드럼폭 150cm이상 69,000</li> <li>○ 사각형</li> <li>- 드럼폭 150cm미만 24,200</li> <li>- 드럼폭 150cm이상 23,640</li> <li>○ 베일+피복일관형 90,000</li> <li>○ 옥수수용 69,000</li> </ul>	
1-2	농업용트랙터용 결속뱃짚절단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형 8,610</li> <li>○ 사각형 2,800</li> </ul>	
1-3	농업용트랙터용계사청소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재량500kg이하 20,000</li> <li>○ 적재량500kg이상</li> </ul>	
1-4	농업용트랙터용과수용작업대	안전검정	○ 전규격 4,480	
1-5	농업용트랙터용과수적화기	자유화	○ 전규격	
1-6	농업용트랙터용구굴기	자유화	○ 오거형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사다리체인형, 로타리형	3,690
1-7	농업용트랙터용굴착기	자유화	○버킷산적용량 0.06m <sup>3</sup> 미만 ○버킷산적용량 0.06m <sup>3</sup> 이상	4,920 7,760
1-8	농업용트랙터용그래플	자유화	○일반형 ○리프트용	1,700 2,680
1-9	농업용트랙터용그레이더	자유화	○300cm미만 ○300cm이상	1,770 1,920
1-10	농업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자유화	○전규격	4,600
1-11	농업용트랙터용 농산물출기절단기	안전검정	○전규격	6,400
1-12	삭제(21.12.31)			
1-13	농업용트랙터용덩굴파쇄기	안전검정	○전규격	2,920
1-14	농업용트랙터용돌수집기	자유화	○전규격	4,230
1-15	농업용트랙터용 돌파쇄기	자유화	○100cm미만 ○100cm이상	12,990 16,300
1-16	농업용트랙터용베일피복기	안전검정	○전규격	20,400
1-17	농업용트랙터용로더	자유화	○버킷산적용량 0.3m <sup>3</sup> 미만 ○버킷산적용량 0.3m <sup>3</sup> 이상 0.4m <sup>3</sup> 미만 ○버킷산적용량 0.4m <sup>3</sup> 이상 0.5m <sup>3</sup> 미만 ○버킷산적용량 0.5m <sup>3</sup> 이상	2,590 3,220 4,000 5,260
1-18	농업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자유화	○절삭식(일반형) - 경폭 130cm미만 - 경폭 130cm이상 150cm미만 - 경폭 150cm이상 160cm미만 - 경폭 160cm이상 170cm미만 - 경폭 170cm이상 180cm미만 - 경폭 180cm이상 190cm미만 - 경폭 190cm이상 200cm미만 - 경폭 200cm이상 220cm미만 - 경폭 220cm이상 240cm미만 - 경폭 240cm이상 260cm미만 - 경폭 260cm이상 280cm미만 - 경폭 280cm이상 300cm미만 - 경폭 300cm이상 400cm미만 - 경폭 400cm이상 500cm미만 - 경폭 500cm이상 ○크랭크식 - 250cm미만 - 250cm이상 ○역회전식 ○폴더형 ○못자리성형식 ○쟁기겸용	1,820 2,430 2,550 2,870 3,120 3,410 4,030 4,350 5,340 5,710 6,020 6,890 7,470 9,800 10,520 8,530 13,610 2,930 18,190 5,620 5,25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1-19	농업용트랙터용모우어	안전검정	○ 디스크형 ○ 컨디셔닝부착형	12,000 23,560
1-20	농업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자유화	○ 일반형(유압짜래포함) - 쇄토펙 2.0m미만 - 쇄토펙 2.0m이상 2.4m미만 - 쇄토펙 2.4m이상 2.6m미만 - 쇄토펙 2.6m이상 ○ 폴더형	2,370 2,970 2,970
1-21	농업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자유화	○ 원심력식 ○ 캠트랙식 - 1축(집초폭350cm미만) - 1축(집초폭350cm이상) - 2축이상(집초폭400cm미만) - 2축이상(집초폭400cm이상) - 밀폐형	6,560 8,890 4,310 16,390
1-22	농업용트랙터용발근기	자유화		
1-23	농업용트랙터용발근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24	농업용트랙터용배토기	자유화	○ 전규격	910
1-25	농업용트랙터용 벼직파기	종합검정	○ 로타베이터포함 - 7조미만 - 7조이상 ○ 건담,습담겸용 - 10조미만 - 10조이상 ○ 파종장치만구입 ○ 접이식	5,400 7,470 2,300 17,440
1-26	삭제('22.12.31)			
1-27	농업용트랙터용비닐수거기	자유화	○ 하우스용 - 300m/회미만 - 300m/회이상 ○ 멀칭비닐용	1,120 1,530 2,330
1-28	농업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분상 - 탑재형 - 500kg미만 - 500kg이상 1,000kg미만 - 1,000kg이상 - 탑재형(유압) - 500kg미만 - 500kg이상 800kg미만 - 800kg이상 - 견인형 ○ 입상 ○ 액상	1,240 1,440 2,120 760 1,240 3,120 1,150
1-29	농업용트랙터용 사료공급기	안전검정	○ 급이통용적 2.0미만m <sup>3</sup> ○ 급이통용적 2.0이상m <sup>3</sup>	3,360 3,68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1-30	농업용트랙터용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오거형 - 배합량 3m <sup>3</sup> 미만 - 배합량 3m <sup>3</sup> 이상 6m <sup>3</sup> 미만 - 배합량 6m <sup>3</sup> 이상 ○드럼회전식 - 배합량 3m <sup>3</sup> 미만 - 배합량 3m <sup>3</sup> 이상 6m <sup>3</sup> 미만	18,900  24,800 30,000
1-31	농업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종합검정	○목초용 - 200cm미만 - 200cm이상 ○옥수수용	40,460 69,000 32,150
1-32	농업용트랙터용수확기	종합검정	○일반형 - 최대굴취폭 140cm미만 - 최대굴취폭 140cm이상 ○덩굴파쇄겸용 ○수집형 ○대과용 ○과실용(농업기계안전장치부착확인)	3,170 3,650 6,560 11,200 12,000
1-33	농업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탑재형 ○견인형 -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 2,000ℓ 이상	4,000 7,360 10,660 12,800
1-34	농업용트랙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전규격	4,170
1-35	농업용트랙터용 심도파쇄기	안전검정 자유화 (진동식)	○진동식 - 1조식 - 2조식 - 3조식 이상 ○산소+석회주입식	1,230 1,230 1,870 7,540
1-36	농업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축분액상비료)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일반살포형 ○원거리살포형 ○땅속투입형	6,310 12,010 19,440
1-37	농업용트랙터용약제살포기	안전검정	○전규격	3,480
1-38	농업용트랙터용원거리용방제기	종합검정	○트랙터탑재형	9,600
1-39	농업용트랙터용정식기	종합검정	○승용형	7,840
1-40	농업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수동 및 기계공급식 ○유압공급식 - 공급로울러폭 250mm미만 - 공급로울러폭 250mm이상	2,780 2,730 7,44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용 자 지 원 한 도 액
1-41	농업용트랙터용제초기	안전검정	○ 일반형 - 제초폭 200cm미만 - 제초폭 200cm이상 ○ 경사지겸용 ○ 양방향형	3,370 5,520 8,950 6,830
1-42	농업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탑재식 - 1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 견인식 - 2000ℓ 미만 - 2000ℓ 이상 ○ 블스프레이어식 - 1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2,800 2,800 2,990 4,640 3,420 5,600
1-43	농업용트랙터용 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제초폭 200cm미만 ○ 제초폭 200cm이상	4,870 6,270
1-44	농업용트랙터용지게발	자유화	○ 전규격	5,200
1-45	농업용트랙터용진압기	자유화	○ 전규격	2,360
1-46	농업용트랙터용탈부착기	자유화	○ 후방부착형 ○ 전방로더부착형	2,000 1,420
1-47	농업용트랙터용톤백사일러	자유화	○ 전규격	4,750
1-48	농업용트랙터용툽밥제조기	안전검정	○ 전규격	8,820
1-49	농업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탑재형 ○ 견인형 - 1톤 미만 - 1톤이상 2톤미만(컨베이어식및이송스크류식) - 2톤이상 3톤미만 - 3톤이상 4톤미만 - 4톤이상 ○ 살포,복토	2,620 2,420 4,410 6,000 8,090 9,680 5,880
1-50	농업용트랙터용 트레일러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일반형 - 적재용량 2.0톤미만 - 적재용량 2.0톤이상 3.0톤미만 - 적재용량 3.0톤이상 3.5톤미만 - 적재용량 3.5톤이상 4.0톤미만 - 적재용량 4.0톤이상 5.0톤미만 - 적재용량 5.0톤이상 ○ 곡물운반형	2,300 2,300 2,760 2,760 3,680 5,920 4,690
1-51	농업용트랙터용파종기	종합검정	○ 감자파종 - 3조미만 - 3조이상 ○ 산파식,조파식,점파식 - 10조미만 - 10조이상 ○ 감자파종 ○ 마늘파종 ○ 복합형 ○ 승용형(안전검정)	3,200 4,800 8,600 14,600 6,840 10,500 9,60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융자지원 한도액
1-52	농업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양용 3련이하 1,620</li> <li>○ 자동양용 4련이상 1,920</li> <li>○ 모듈드보드 단용1련 1,610</li> <li>○ 모듈드보드 단용2련 1,610</li> <li>○ 모듈드보드 단용3련 2,190</li> <li>○ 모듈드보드 단용4련 2,550</li> <li>○ 모듈드보드 단용5련이상 2,810</li> <li>○ 모듈드보드 양용.2련이하 2,650</li> <li>○ 모듈드보드 양용.3련 4,520</li> <li>○ 모듈드보드 양용.4련이상 5,820</li> <li>○ 원판비구동 3련이하 2,280</li> <li>○ 원판비구동 4련이상 4,700</li> <li>○ 원판구동 6련미만 3,750</li> <li>○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5,120</li> <li>○ 원판구동 10련이상 6,930</li> <li>○ 이랑 5련미만 1,110</li> <li>○ 이랑 5련 1,910</li> <li>○ 이랑 6련 1,910</li> <li>○ 이랑 7련 2,260</li> <li>○ 이랑 8련이상 2,330</li> <li>○ 치즐 8련미만 3,270</li> <li>○ 치즐 8련이상 4,620</li> <li>○ 복합형(로타베이터포함) 8,240</li> </ul>	
1-53	농업용트랙터용해로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스크 및 로타리형</li> <li>- 500cm미만 20,800</li> <li>- 500cm이상 36,000</li> </ul>	
1-54	농업용트랙터용휴립복토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두독식 2,490</li> <li>○ 2두독식 4,400</li> <li>○ 3두독식 9,280</li> <li>○ 4두독식 12,160</li> <li>○ 복합형 6,110</li> </ul>	
1-55	농업용트랙터용휴립피복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li> <li>- 1두독식 1,520</li> <li>- 2두독식 2,320</li> <li>- 3두독식 2,320</li> <li>- 4두독식 5,200</li> <li>○ 복합형</li> <li>- 4두독식미만 5,600</li> <li>- 4두독식이상 7,440</li> </ul>	
2	경운기	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4kW(6마력)이상 5.8kW(8마력)미만 2,970</li> <li>○ 5.8kW(8마력)이상 560</li> <li>○ 본체포함 구입시의 부속작업기 (700천원미만)</li> </ul>	
2-1	경운기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탑재형	
2-2	경운기용구굴기	자유화		
2-3	경운기용굴착기	안전검정	○ 전규격	
2-4	경운기용로터	자유화		
2-5	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86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2-6	경운기용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1,090
2-7	경운기용배토기	자유화		
2-8	경운기용벼직파기	자유화		
2-9	경운기용비닐피복기	자유화		
2-10	경운기용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690
2-11	경운기용사료배합기	자유화		
2-12	경운기용수확기	자유화	○ 땅속작물류(고구마,양파,마늘,감자등) ○ 엽채류	1,320 1,600
2-13	삭제(21.12.31)			
2-14	경운기용스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전규격	
2-15	경운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2-16	경운기용심토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7,090
2-17	경운기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2,000
2-18	경운기용쟁기	자유화		
2-19	경운기용전정기	자유화		
2-20	경운기용제초기	안전검정	○ 일반형 ○ 전지목파쇄겸용 ○ 비료살포겸용	960 1,280
2-21	경운기용주행형분무기	안전검정		
2-22	경운기용중경제초기	자유화		
2-23	경운기용철차륜	자유화		
2-24	경운기용톱밥제초기	안전검정	○ 수동공급식 ○ 자동공급식	
2-25	경운기용퇴비살포기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전규격	4,170
2-26	경운기용트레일러 (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유압덤프형 ○ 차동구동형 ○ 일반형	2,370 1,510 1,220
2-27	경운기용파종기	자유화	○ 전규격	3,520
2-28	경운기용휴집기	자유화		1,760
2-29	경운기용휴집복토기	자유화	○ 전규격	960
3	삭제(19.12.31)			—
4	보행이앙기	종합검정	○ 2조 ○ 4조	2,750
5	승용이앙기	종합검정	○ 4조~6조(크랭크식) ○ 5조(로타리식) ○ 6조(로타리식) ○ 8조이상(로타리식) ○ 멀칭용 ○ 부분경운형 ○ 본체포함 구입시의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5,870 17,440 17,440 15,620 17,810 590
5-1	승용이앙기용농산물절단기	안전검정	○ 양파줄기	5,440
5-2	승용이앙기용배토기	자유화	○ 전규격	2,400
5-3	승용이앙기용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4,160
5-4	승용이앙기용약제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1,440
5-5	승용이앙기용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전규격	8,140
5-6	승용이앙기용축조시비기	자유화	○ 전규격	4,20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6	콤바인	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탈포대형</li> <li>- 2조~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li> <li>-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li> <li>- 4조이상</li> <li>○ 자탈산물형</li> <li>- 2조</li> <li>- 3조</li> <li>- 4조</li> <li>- 5조 이상</li> <li>○ 보통형</li> <li>○ 입승식</li> </ul>	<p style="text-align: right;">22,090</p> <p style="text-align: right;">27,410</p> <p style="text-align: right;">14,540</p> <p style="text-align: right;">27,800</p> <p style="text-align: right;">46,620</p> <p style="text-align: right;">56,480</p> <p style="text-align: right;">56,480</p> <p style="text-align: right;">16,800</p>
6-1	삭제(19.12.31)			—
7	보행관리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kw(5.5마력)이하</li> <li>○ 4kw(5.5마력)초과~7.35kw(10마력)이하</li> <li>○ 7.35kw(10마력)초과</li> <li>○ 본체와 구입시의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li> </ul>	<p style="text-align: right;">1,630</p> <p style="text-align: right;">2,010</p> <p style="text-align: right;">4,000</p> <p style="text-align: right;">560</p>
7-1	보행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 전규격	
7-2	보행관리기용굴취기	자유화		
7-3	보행관리기용논두렁조성기	자유화		
7-4	보행관리기용동력분무기	안전검정	○ 전규격	4,000
7-5	보행관리기용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940
7-6	보행관리기용배토기	자유화	○ 전규격	630
7-7	보행관리기용벼적파기	자유화		
7-8	보행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 전규격	
7-9	보행관리기용비닐수거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이하</li> <li>○ 200초과</li> </ul>	<p style="text-align: right;">1,840</p> <p style="text-align: right;">2,360</p>
7-10	보행관리기용비닐피복기	자유화	○ 전규격	
7-11	보행관리기용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680
7-12	삭제(19.12.31)			—
7-13	보행관리기용수확기	자유화	○ 열채류	1,400
7-14	보행관리기용스크레이퍼	자유화		
7-15	보행관리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620
7-16	보행관리기용예취기	안전검정	○ 전규격	1,380
7-17	보행관리기용이랑다지기	자유화	○ 전규격	
7-18	보행관리기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440
7-19	보행관리기용쟁기	자유화	○ 전규격	
7-20	보행관리기용전정기	자유화		
7-21	보행관리기용제초기	안전검정	○ 전규격	740
7-22	보행관리기용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전규격	
7-23	보행관리기용트레일러	자유화	○ 전규격	1,350
7-24	보행관리기용파종기	자유화	○ 전규격	1,080
7-25	보행관리기용혈굴기	자유화		
7-26	보행관리기용휴집기	자유화	○ 전규격	
7-27	보행관리기용휴집피복기	자유화	○ 전규격	
8	승용관리기	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li> <li>○ 겸용형(SS장치 및 적재함포함)</li> <li>○ 본체와 구입시의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li> </ul>	<p style="text-align: right;">14,350</p> <p style="text-align: right;">560</p>
8-1	승용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 논밭용	2,05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8-2	승용관리기용동력분무기	안전검정	○전규격 ○봄스프레이어식	1,750 5,280
8-3	승용관리기용로타리	자유화	○전규격	2,130
8-4	승용관리기용벼직파기	자유화		
8-5	승용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8-6	삭제('22.12.31)			
8-7	승용관리기용비닐피복기	자유화	○전규격	620
8-8	승용관리기용비료살포기	안전검정	○전규격	2,250
8-9	승용관리기용수확기	자유화		2,640
8-10	삭제(21.12.31)			
8-11	승용관리기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8-12	승용관리기용쟁기	자유화		
8-13	승용관리기용제초기	안전검정	○전규격	2,100
8-14	승용관리기용퇴비살포기	안전검정		
8-15	승용관리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전인형	
8-16	승용관리기용휴집기	자유화		
8-17	승용관리기용휴집피복기	자유화	○2두둑	2,150
8-18	승용관리기용그래이더	자유화	○전규격	1,260
8-19	승용관리기용파종기	종합검정	○전규격	2,200
9	가동시간계측기	부품검정		400
10	가정용도정기 (1kW이상 10kW이하)	종합검정 (전기안전성 시험포함)	○임펠러형,롤러형,공냉식 - 200kg이하 - 200kg초과~250kg이하 - 250kg초과 ○현미전용	1,560 1,690 2,380 6,040
11	삭제(19.12.31)			—
12	곡물건조기	안전검정	○순환식 (단위: 건조용량) - 4,000kg미만 - 4,000kg이상 5,000kg미만 - 5,000kg이상 7,000kg미만 - 7,000kg이상 10,000kg미만 - 10,000kg이상 20,000kg미만 - 20,000kg이상	7,780 8,430 9,290 11,680 14,000 31,720
12	곡물건조기	안전검정	○원적외선순환식 - 4,000kg미만 - 4,000kg이상 5,000kg미만 - 5,000kg이상 7,000kg미만 - 7,000kg이상 ○상온통풍식 ○상온통풍,교반식 - 30,000kg미만 - 30,000kg이상 40,000kg미만 - 50,000kg이상 ○다공호퍼식	9,020 9,220 10,020 12,680 15,960 18,920 21,360
13	삭제(19.12.31)			—
14	곡물선별기	자유화	○전규격	16,800
15	삭제(19.12.31)			—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16	곡물이송기	자유화	○ 10톤/h미만 ○ 10톤/h이상 15톤/h미만 ○ 15톤/h이상	890 1,250 1,250
17	곡물적재함	안전검정 (탑재용외) 자유화 (탑재용)	○ 트레일러용 - 3.0톤미만 - 3.0톤이상 ○ 탑재용	2,400 2,700 2,700
18	삭제(19.12.31)			—
19	과수인공교패기	자유화	○ 약채취, 정선, 화분정선	3,270
20	과실수집기	자유화	○ 전규격	1,580
21	삭제(19.12.31)			—
22	농가용식물영양제제조기	자유화	○ 1,000미만 ○ 1,000이상~6,000미만 ○ 6,000이상	2,660 23,120 52,030
23	농산물건조기	종합검정 (전기안전시험 병행, 굵감사의 경우 상능비교 시험 병행)	○ 유류선반식 (단위 : 건조용량) - 100kg미만 - 100kg이상 300kg미만 - 300kg이상 500kg미만 - 500kg이상 700kg미만 - 700kg이상 900kg미만 - 900kg이상 ○ 선반자동식 - 200kg미만 - 200kg이상 400kg미만 - 400kg이상 600kg미만 - 600kg이상 ○ 선반원적외선식 ○ 선반순환식	1,720 2,960 3,950 5,030 5,600 5,600 3,680 4,300 5,680
23	농산물건조기	종합검정 (전기안전시험 병행, 굵감사의 경우 상능비교 시험 병행)	○ 겸용식 - 400kg미만 - 400kg이상 700kg미만 - 700kg이상 1,000kg미만 - 1,000kg이상 2,000kg미만 - 2,000kg이상 ○ 전기식 - 100kg미만 - 100kg이상 200kg미만 - 200kg이상 300kg미만 - 300kg이상 ○ 전기, 기름겸용식 - 300kg미만 - 300kg이상 ○ 대차식히트펌프 ○ 굵감전용 - 50접미만 - 50접이상~100접미만	2,920 3,420 4,000 4,800 1,560 2,430 3,410 3,930 3,080 4,440 52,030 4,400 8,92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융자지원 한도액
			- 100접이상 ○꽃감전용(저온겸용)	12,240
			- 100접미만	16,000
			- 100접이상 ○진공식, 저온 ○근적외선식	24,000
				3,020
23-1	냉장겸용농산물건조기	종합검정 (잔인잔시험병행)	- 100kg미만 - 100kg이상	1,810 2,880
24	농산물결속기	자유화	○접착결속식 - 수동공급식 - 상자결속식 - 화훼결속식 ○매듭결속식 - 수동공급식 - 자동,컨베이어식 ○꼬임결속식 - 15cm미만 - 15cm이상 ○포장결속식 ○클립식 ○난좌판결속기	1,040 2,400 3,840 4,000 15,690 2,560 3,830 2,960 24,000
25	농산물교반기	자유화	○브러쉬회전식 - 200kg미만 - 200kg이상	7,440 8,400
26	농산물분쇄기	안전검정	○고추가공	3,120
27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종합검정 (비파괴선별)	○과일 - 중량식(자유화) · (스세척)원형(스프링) · (스세척)편측 · (스수동,반자동)원형 · (스수동)양측, 10단미만 · (스수동)양측, 10단이상 · (스수동)편측, 10단미만 · (스수동)편측, 10단이상 · (스자동)원형 · (스자동)편측,양측 10단미만 · (스자동)편측,양측 10단이상 · (추수동)10단미만 · (추수동)10단이상 · (추반자동,추자동) · (전자수동)10단미만 · (전자수동)10단이상 · (전자자동)10단미만 · (전자자동)10단이상 14단미만 · (전자자동)14단이상 · (전자세척)	2,320 1,520 2,720 2,560 4,040 1,900 4,160 5,690 4,280 5,510 4,830 4,400 6,800 5,450 7,300 10,28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33	농산물포장기	안전검정	○ 전규격	
34	삭제(19.12.31)			—
34-1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자유화	○ 전규격	52,030
34-2	벼품질단백질자동판정기	성능시험	○ 전규격	52,000
34-3	벼품질자동판정기	자유화	○ 200g~500g/회(탈망정선식)	26,400
34-4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성능시험	○ 전규격	52,030
34-5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자유화	○ 전규격	3,440
35	삭제(19.12.31)			—
36	농업용결속기	자유화	○ 전규격	840
37	농업용고소작업차	안전검정	○ 고소작업차 - 엔진용 - 전기용 또는 수소전지용 ○ 과수용작업대 - 수동승강식 - 수직상승형무한계도형	14,400 18,240 2,240 6,800
38	농업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토출량 30 ℓ /min미만 ○ 토출량 30 ℓ /min이상 ○ 모터구동	1,970 9,280 1,520
39	농업용공기교반기	자유화	○ 하향식송풍회전형 ○ 수평식송풍회전형 - 40평미만 - 40평이상	2,100 2,360 2,530
40	농업용공기순환제습기	자유화	○ 전규격	2,740
41	농업용굴착기 (자체중량 1톤미만까지)	종합검정 (1톤미만)	○ 버티산적용량 0.020m <sup>3</sup> 미만 ○ 버티산적용량 0.020m <sup>3</sup> 이상	20,960 22,240
42	농업용난방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시험이불가한기종은공인 시험기관의성능시험으로함)	종합검정 (LPG/LNG- 성능시험 및 가스안전성 시험병행) (방열형-전기 안전 인증) ※ 전기사용 난방기일경우 전기안전성 시험병행	○ 경유온풍형(종합검정)(단위 : mJ(kcal/h) - 120(30천)미만 - 250(60천)미만 - 250(60천)이상 415(100천)미만 - 415(100천)이상 625(150천)미만 - 625(150천)이상 835(200천)미만 - 835(200천)이상 1,250(300천)미만 - 1,250(300천)이상 1,465(350천)미만 ○ 중유온풍형(종합검정) - 835(200천)미만 - 835(200천)이상 1,045(250천)미만 - 1,045(250천)이상 1,250(300천)미만 - 1,250(300천)이상 1,465(350천)미만 - 1,465(350천)이상 ○ 중유용병커C유(종합검정) - 835(200천)미만 - 835(200천)이상 1,250(300천)미만 - 1,250(300천)이상 1,465(350천)미만 - 1,465(350천)이상 ○ 연탄온풍형 (종합검정) - 415(100천)미만 - 415(100천)이상 665(160천)미만 - 665(160천)이상 835(200천)미만	1,560 2,200 2,940 4,200 4,990 5,680 7,930 6,080 7,730 9,610 9,610 12,130 7,760 11,000 12,850 13,620 5,81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온풍형(종합검정및전기안전시험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kw(2.4천) 초과 100(24천)미만 2,010</li> <li>- 100(24천)이상 209(50천)이하 8,530</li> <li>- 209(50천)초과 335(80천)이하 11,680</li> <li>- 335(80천)초과 419(100천)이하 12,170</li> </ul> </li> <li>○ 열매체축열식(종합검정및전기안전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71천)미만 21,920</li> <li>- 300(71천)이상 400(95천)미만 23,600</li> <li>- 400(95천)이상 52,030</li> </ul> </li> <li>○ 경유보일러형(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형, 210(50천)이상 1,250(300천)미만 1,380</li> <li>- 입형, 1,250(300천)이상</li> <li>- 횡형, 210(50천)이상 670(160천)미만 2,640</li> <li>- 횡형, 670(160천)이상 835(200천)미만 3,570</li> <li>- 횡형, 835(200천)이상 2,095(500천)미만 9,600</li> </ul> </li> </ul>	
42	농업용난방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시험이불가한기종은공인 시험기관의성능시험으로함)	종합검정 (LPG/LNG - 성능시험 및 가스안전성 시험병행) (방열형-전기 안전 인증) ※ 전기사용 난방기일경우 전기안전성 시험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연탄,코크소보일러형(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60천)미만 4,540</li> <li>- 250(60천)이상 415(100천)미만</li> <li>- 415(100천)이상 665(160천)미만</li> <li>- 665(160천)이상 1,255(300천)미만 9,200</li> <li>- 1,255(300천)이상 13,200</li> </ul> </li> <li>○ 중유보일러형(종합검정) 13,440</li> <li>○ 전기보일러형(종합검정및전기안전성시험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24천)미만 4,540</li> <li>- 100(24천)이상 10,750</li> </ul> </li> <li>○ 물분자식(종합검정및전기안전성시험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35천)미만 10,520</li> <li>- 150(35천)이상 200(47천)미만 15,820</li> <li>- 200(47천)이상 27,200</li> </ul> </li> <li>○ 등유온풍형(종합검정)(210(50천)이상) 7,250</li> <li>○ 전기,경유겸용형(종합검정및전기안전병행) 7,820</li> <li>○ 전기방열형(종합검정및전기안전인증) 1,560</li> <li>○ 펠렛,온풍형(종합검정)(210(50천)이상) 12,310</li> <li>○ 펠렛,보일러형(종합검정)(210(50천)이상) 29,520</li> <li>○ 펠렛,온풍,보일러겸용(종합검정)(210(50천)이상)</li> <li>○ 연탄,경유,보일러형(종합검정)(210(50천)이상) 19,040</li> <li>○ 펠렛,전기(종합검정및전기안전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0(50천)이상 1,000(240천)미만 25,600</li> <li>- 1,000(240천)이상 34,400</li> </ul> </li> <li>○ 전기,무연탄보일러(종합검정및전기안전병행) 9,600</li> <li>○ 왕겨탄형(종합검정)</li> <li>○ 세라믹히터(종합검정및전기안전성시험병행)</li> <li>○ 온수형전기(종합검정및전기안전성시험병행) 800</li> <li>○ 목분보일러(종합검정)</li> <li>○ LPG/LNG (성능시험및가스안전성시험병행)</li> </ul>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 100미만 - 1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3,840 12,360 13,200
43	농업용냉난방기 (히트펌프식은 -15°C COP2이상, 7°C COP3이상, 제상시험 COP2이상)	자유화 성능시험 및 전기안정성 시험병행	○ 팬코일유닛식(열교환기)(자유화) -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50㎡미만 - 50㎡이상 90㎡미만 - 90㎡이상	880 1,040 1,240 1,480 1,810 2,560 3,040
43	농업용냉난방기 (히트펌프식은 -15°C COP2이상, 7°C COP3이상, 제상시험 COP2이상)	자유화 성능시험 및 전기안정성 시험병행	○ 히트펌프식(성능시험및전기안정병행) - 공기대공기 - 공기대물 - 지열대공기 ○ 지하수온수(자유화)	7,360 24,000 43,780 4,340
44	농업용동력운반차	종합검정(승용) 안전검정(승용외)	○ 보행형(엔진용/전기용,수소전지용) - 0.15톤미만 - 0.15톤이상 ~ 0.35톤미만 - 0.35톤이상 ~ 0.5톤이하 - 4륜구동방식 - 6륜구동방식 ○ 보행궤도형(엔진용/전기용,수소전지용) - 0.5톤미만 - 0.5톤 ○ 승용형 - 2륜구동방식 - 4륜구동방식 ○ 승용궤도형 ○ 승용4륜겸용형 - 1.0톤미만 - 1.0톤이상 ○ 레일형 - 모노레일식 - 트윈레일식 - 전동식 ○ 자율주행형	1,400/1,680 2,480/3,600 2,480/4,560 2,950/4,000 3,360/4,800  3,520/4,800 3,660/6,400  6,110 14,970 14,120  15,280 19,770  2,400 2,720
45	농업용동력작업대	안전검정	○ 보조작업차 (주행속도 4km이하/운전자포함적재량100kgf 이하) - DC12(충전식) - DC24(충전식)	700 2,080
46	삭제(19.12.31)			
47	농업용로더 (자체중량 2톤미만)	종합검정 (차체굴절식은 4톤미만)	○ 바퀴식 - 0.15㎡미만 - 0.15㎡이상 0.25㎡미만 - 0.25㎡이상 0.30㎡미만 - 0.3㎡이상 ○ 무한궤도식	22,400 23,200 24,080 24,08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48	농업용리프트	안전검정	○전동유압식 ○차량탑재형(상하차운반)	3,090 4,800
49	농업용베일러	종합검정 안전검정	○승용자주(종합검정) ○승용자주외(안전검정)	69,000
50	농업용수처리기 *미세기포는 평균분포도가 직경 50 $\mu$ m(마이크로미터, 1 $\mu$ m=0.001mm) 이하일 것	성능시험	○이온수(물 비교시험성적서) ○자화수(물 비교시험성적서) - 관면적 30미만 - 관면적 30이상 40미만 - 관면적 40이상 50미만 - 관면적 50이상 60미만 - 관면적 60이상	7,200 1,020 1,520 3,040 3,320
50	농업용수처리기 *미세기포는 평균분포도가 직경 50 $\mu$ m(마이크로미터, 1 $\mu$ m=0.001mm) 이하일 것	성능시험	○차외전살균(물 비교시험성적서) ○오존수(물 비교시험성적서) ○차아염소산수 (물 비교시험 및 차아염소산수 발생량 측정시험성적서) ○지하수(물 비교시험성적서) ○산소(산소발생량, 용해도, 물 비교시험성적서) ○활성수기(국립원예특작과학원생육시험, 물 비교시험성적서) - 관직경40미만 - 관직경40이상 ○미세기포(미세기포 크기분석 및 생육비교시험) - 30만개미만 - 30만개이상	5,200 2,800 10,680 4,400 1,600 4,200 6,000 13,200 17,600
51	농업용음이온발생기	자유화	○전규격	680
52	삭제(19.12.31)			
53	농업용지주설치기	자유화	○전규격	1,680
54	농업용콘베이어	안전검정	○유압모터용 ○A/C모터용 ○DC모터, AC/DC 겸용 - 500kg미만 - 500kg이상 ○엔진용 ○일폐상용	1,990 2,560 5,960 2,560
55	농업용튽밭제조기	안전검정	○모터 수동공급식 ○모터 자동공급식 - 10kw미만 · 1.0m <sup>3</sup> /min미만 · 1.0m <sup>3</sup> /min이상 - 10kw이상 30kw미만 · 4.0m <sup>3</sup> /min미만 · 4.0m <sup>3</sup> /min이상 - 30kw이상 ○엔진부착형 - 수동공급식 - 자동공급식 .10kw미만 .10kw이상 50kw미만 .50kw이상	6,800 8,800 32,880 24,160 38,51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56	농업용펌프	자유화	○전규격	3,600
57	삭제(19.12.31)			—
58	농업용환풍기	자유화 전기안전 (히터부착형)	○열회수 및 열교환식형 - 토출량 30m <sup>3</sup> /min미만 - 토출량 30m <sup>3</sup> /min이상 ○히터부착형	840
58	농업용환풍기	자유화 전기안전 (히터부착형)	○열회수형 난방겸용 - 토출량 50m <sup>3</sup> /min미만 - 토출량 50m <sup>3</sup> /min이상	2,600 6,200
59	삭제(19.12.31)			—
60	삭제(19.12.31)			—
61	동력배토기	자유화	○전규격 ○시설하우스 상토용	1,280
62	동력분무기	종합검정          안전검정	○고정형 ○승용자주형 - 500ℓ 미만 - 500ℓ 이상 ○자율주행형(엔진용/전기용) - 100ℓ 미만 - 100ℓ 이상 300ℓ 미만 - 300ℓ 이상 500ℓ 미만 - 500ℓ 이상 ○보행자주형 - 100ℓ 미만 - 100ℓ 이상 300ℓ 미만 - 300ℓ 이상 500ℓ 미만 - 500ℓ 이상	13,200  14,900 25,370  5,500/11,000 7,500/16,500 9,500/18,000 11,000/19,600  2,160 3,470 5,760 7,490
63	동력비닐수거기	자유화	○고정형 ○엔진부착형	2,880
64	삭제(19.12.31)			
65	동력살분무기	자유화	○배부식 ○보행자주형	1,000
66	동력살포기 (원격조종보트는 비승용형구조, 엔진배기체적 100cm <sup>3</sup> 이하의 농업용제초제살포전용일 것)	안전검정 (승용자주형외) 종합검정 (승용자주형)	○액상, 승용자주형(종합검정) ○보행자주형(안전검정) ○액상, 운반겸용(안전검정) - 1,000ℓ 이상 1,500ℓ 미만 - 1,500ℓ 이상 2,000ℓ 미만 - 2,000ℓ 이상 ○입제형(안전검정) ○원격조종보트(제초제살포)(안전검정)	19,520 6,400 18,880 29,720 3,040 3,760
67	동력상토조제기	자유화	○일반형 - 10톤/h미만 - 10톤/h이상 20톤/h미만 - 20톤/h이상 ○콘베이어부착형 - 20톤/h미만 - 20톤/h이상	700 1,210 9,320 3,260 5,65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68	동력수확기	종합검정 안전검정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안전검정)</li> <li>○ 엽채류</li> <li>○ 감자, 승용자주형</li> <li>○ 양파, 마늘, 승용자주형</li> <li>○ 무, 승용자주형</li> <li>○ 땅콩, 승용자주형</li> <li>○ 고추, 승용자주형</li> <li>○ 양파, 보행자주형</li> </ul>	2,400 5,600 37,760 40,480 52,030 42,880 52,030 10,810
69	동력연무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ℓ/h이상(고온식)</li> <li>○ 90ℓ/h이상(고온배부, 수레 고정식)</li> <li>○ 상온 고정식</li> <li>- 20ℓ/h미만</li> <li>- 20ℓ/h이상</li> <li>○ 상온 원심이동식(모터)</li> <li>○ 상온 원심이동식(엔진, 발전기)</li> </ul>	1,080 1,250 1,920 2,420 3,340 6,000
69	동력연무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식</li> <li>○ 상온 회전식</li> <li>○ 상온 이동식</li> </ul>	2,100 6,800
70	예취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규격</li> </ul>	4,280
71	삭제(19.12.31)			
72	정식기	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 보행형</li> <li>- 1조</li> <li>- 2조이상</li> <li>- 승용형</li> <li>○ 인삼전용(수동)</li> <li>○ 양파, 보행형</li> <li>○ 모종자동이식로봇</li> </ul>	15,000 29,700 18,400 3,000
73	동력제초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주형</li> <li>○ 승용자주형</li> <li>○ 보행중앙구동형</li> <li>○ 원격조종형</li> <li>- 100cm미만</li> <li>- 100cm이상</li> <li>○ 견인형(승용)</li> </ul>	3,420 14,430 29,600 37,600
74	동력중경제초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형</li> <li>○ 승용자주형</li> </ul>	1,040 44,800
75	탈곡기	자유화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착식 또는 엔진.모터식(자유화)</li> <li>- 400kg미만</li> <li>- 400kg이상</li> <li>○ 주행형 (안전검정)</li> </ul>	1,400 1,860 6,620
76	동력퇴비살포기	안전검정 (승용자주형) 종합검정 (승용자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형, 승용형, 운반검용형</li> <li>○ 차량탑재형 및 트레일러탑재형</li> <li>○ 땅속투입형</li> </ul>	17,200 5,240
77	농업용파쇄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가지파쇄</li> <li>○ 이동형, 모터부착형(공급로올러폭)</li> <li>- 30kw미만(300mm미만)</li> <li>- 30kw미만(300mm이상)</li> <li>○ 고정형, 모터부착형</li> </ul>	1,240 1,69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 30kw이상 90kw미만,200mm미만 - 90kw이상,300mm미만 ○ 고정식 - 51.5kw(70마력)미만 - 51.5kw(70마력)이상 ○ 엔진부착형 - 이동식 - 견인식,14.7kw(20마력)미만 - 14.7kw(20마력)이상 51.5kw(70마력)미만 - 51.5kw(70마력)이상	14,400 36,400 17,800 38,360 2,820 18,910 35,250
77	농업용과쇄기	안전검정	○ 승용자주형 - 7.4kw(10마력),300mm미만 - 51.5kw(70마력),250mm미만 - 51.5kw(70마력),250mm이상 ○ 보행자주형 - 15kw,(20마력),300mm미만 - 15kw,(20마력),300mm이상 - 51.5kw(70마력)미만,250mm미만 - 51.5kw(70마력)미만,250mm이상 - 51.5kw(70마력)이상,250mm미만 - 51.5kw(70마력)이상,250mm이상 * 버섯벚짚과쇄 ○ 모터 5kw미만 ○ 모터 5kw이상 * 넝쿨과쇄(=넝쿨,절단집경폭) * 결속벚짚절단(베일집경폭) * 사료절단	14,400 27,290 52,030 4,310 4,310 20,400 30,490 30,490 5,600 6,480 4,920
78	동력과종기	종합검정	○ 씨앗용(소종자) - 7조미만 - 7조이상~15조미만 - 15조이상~27조미만 ○ 마늘용 ○ 승용형	1,410 3,190 3,320 2,800 20,460
79	마늘쪽분리기	안전검정	○ 원추원통형 ○ 로울러압착형 ○ 벨트압착형	2,370 2,740
80	무인자동방제기	종합검정	○ 열선유도식 ○ 유도케이블식(과수용) ○ 고정경로주행식 ○ 고정경로회전식 ○ 고정식 ○ 원격(무선)조종식	4,110 52,030 9,930
81	무인항공방제기 (이륙중량25kg 초과할 경우 항공 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 병행)	종합검정 (안전성인증 병행)	○ 헬기 ○ 드론 - 약액통10리터미만 - 약액통10리터~15리터미만 - 약액통15리터이상	52,030 9,800 12,000 20,000
82	미생물배양기	자유화	○ 전규격	11,59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83	삭제(19.12.31)			—
84	삭제(19.12.31)			—
85	버섯배지제조기	자유화	○ 전규격	36,660
86	버섯배지침봉기	자유화	○ 전규격	2,400
87	삭제(19.12.31)			—
88	버섯종균분쇄기	자유화	○ 액체 - 800ℓ 미만 - 800ℓ 이상~1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5,940 6,910 7,460
89	버섯파기(전용형)	종합검정	○ 보행형 ○ 승용형 ○ 전규격	25,210
90	벗짚소독기	자유화	○ 전규격	6,000
91	비닐하우스스피복장치	자유화		1,350
92	사료공급기	안전검정	○ 자주식 - 1.0m <sup>3</sup> 미만 - 1.0m <sup>3</sup> 초과 ○ 탑재식 - 5.0m <sup>3</sup> 미만 - 5.0m <sup>3</sup> 이상 ○ 레일식	9,600 12,240 10,400 15,600
93	사료배합기 (차량용은사료배합기 부분만 인정 차량은 제외)	안전검정	○ 사료배합통 - 1m <sup>3</sup> 미만 - 1m <sup>3</sup> 이상 5m <sup>3</sup> 미만 - 5m <sup>3</sup> 이상 10m <sup>3</sup> 미만 - 10m <sup>3</sup> 이상 30m <sup>3</sup> 미만 - 30m <sup>3</sup> 이상 ○ 발효기능포함 - 10m <sup>3</sup> 미만 - 10m <sup>3</sup> 이상 ○ 화식사료용 - 3m <sup>3</sup> 미만 - 3m <sup>3</sup> 이상 ○ 차량탑재식오거형(수직형배합기 차량용)	3,840 7,200 35,180 36,080 60,000 21,480 63,720 33,440 38,400 69,000
94	삭제(19.12.31)			—
95	송아지용자동포유기	자유화		17,760
96	삭제(19.12.31)			—
97	수막난방용용수공급장치	자유화	○ 전규격	9,000
98	스피드스프레이어	종합검정	○ 자주(보행)형 (단위:약액탱크용량) - 500ℓ 미만 - 500ℓ 이상 ○ 자주(승용)형 - 500ℓ 미만 - 500ℓ 이상~1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 자주(승용, 안전캡)형 - 1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 자주(승용, 겸용)형 - 500ℓ 미만 - 500ℓ 이상 600ℓ 미만	6,300 8,720 11,360 20,120 30,600 27,070 36,220 13,560 21,15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용자지원 한도액
			- 600ℓ 이상~1,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 자주(무인, 전기)형 - 500ℓ 미만 - 500ℓ 이상	26,050 29,960 - 19,600
98	스피드스프레이어	종합검정	○ 무선원격제어장치	12,960
98-1	스피드스프레이어용굴착기	자유화	○ 승용자주식	4,620
98-2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사료공급기	안전검정	○ 전규격	7,840
98-3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98-4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원거리용방제기	종합검정	○ 전규격	3,960
98-5	스피드스프레이어용작업대	안전검정	○ 전규격	3,560
98-6	스피드스프레이어용제초기	안전검정	○ 전규격	2,800
98-7	스피드스프레이어용 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일반형 ○ 구굴, 살포, 복토겸용 - 1.0톤 미만 - 1.0톤 이상	3,920 11,120 11,840
99	신선도유지기 (오존발생기용 -자유화및 오존농도는공인시험기관성적서)	공인시험	○ 1-MCP 발생기용 ○ 에틸렌가스제거기용 ○ 오존발생기용(오존농도계측기부착) ○ 이산화염소혼증소독 - 400미만 - 400이상 1,000미만 - 1,000이상	1,680 4,960 3,200 19,600 26,400
100	악취제거기	공인시험 (잔인시험 병행)	○ 전규격	14,400
101	온습도조절기	자유화	○ 전규격	1,100
102	삭제(19.12.31)			—
103	삭제(19.12.31)			—
104	삭제(19.12.31)			—
105	원거리용방제기	종합검정	○ 탐재형, 견인형, 정치형 ○ 자주형	52,030 52,030
106	삭제(19.12.31)			—
107	육묘상자세척기	자유화	○ 전규격	1,780
108	육묘상자이송기	자유화	○ 12m미만 ○ 12m이상	1,400 2,800
109	삭제(19.12.31)			—
110	삭제(19.12.31)			—
111	육묘용파종기	자유화	○ 산파식 ○ 롤브러쉬방식	2,560 22,000
112	육묘잎자르기	안전검정	○ 보행형	3,600
113	삭제(19.12.31)			—
114	삭제(19.12.31)			—
115	삭제(19.12.31)			—
116	삭제(22.12.31)			—
117	자주형심도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24,640
118	정전대전방제기	자유화	○ 레일이동식 ○ 선로변환레일이동식	10,880

(단위: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융자지원 한도액
119	조사료수경배기 (영양분석, 안전성등)	공인기관성적서	○ 15m미만 ○ 15m이상 20m미만 ○ 20m이상	31,200 39,200 52,030
120	종자발아기	자유화	○ 500kg미만 ○ 500kg이상 ○ 육묘상자용 - 1,000kg미만 - 1,000kg이상	840 1,200 1,730 5,960
121	삭제(19.12.31)			
122	종자부착기	종합검정	○ 1조 ○ 2조	11,200 16,800
123	종자선별기	자유화	○ 별씨엽수선 ○ 별씨선별	1,600 960
124	종자소독기	자유화	○ 전규격	3,400
125	삭제(19.12.31)			—
126	축분고액분리기	자유화	○ 원심식 ○ 진동식 ○ 스크류압착식 ○ 롤러압착식	19,000 13,020 13,190
127	축사용동력청소기	종합검정	○ 승용자주형(계(鷄)사용)	
128	축사용환경제어장치	자유화	○ 태양광LED 조명제어	1,680
129	삭제(19.12.31)			—
130	삭제(19.12.31)			—
131	콩정선기	자유화	○ 전규격	7,470
132	탈망기	자유화	○ 별씨 ○ 마늘	610 1,360
133	토양소독기(전용형)	안전검정	○ 지중온수용 ○ 자주식 - 10조이하 - 10조초과	9,760 24,000 40,000
134	하우스환경제어장치	공인시험 (신뢰성, 전자파)	○ 배지합수율측정기	4,320
135	삭제(19.12.31)			—
136	휴대용전동가위	자유화	○ 전규격	2,280
137	휴대용전동적화기	자유화	○ 전규격	960
138	농업용탈수기	자유화	○ 별씨	8,320
139	양돈출하규격판정기	공인시험	○ 비접촉식(휴대형)	6,520
140	탄산가스공급기	성능시험 (생육비교시험) 자유화	○ 압축공기식 ○ 액화식	12,000 36,000

※ 지원한도액은 상위 지원규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진입요건 중 외부공인기관의 인증시험·승인 대상기종은 시험성적서와 함께 주요제원 및 규격이 표시된 자체시험성적서 첨부

(별표 3)

## 중고농업기계 용자지원 기준표

연 식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사용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트랙터	내용연수(8년)	_____														
	부품공급연한(12년)	_____														
	용자기준율(%)	60	57	55	52	48	45	42	38	35	30	25	25	25	25	25
이앙기 · 콤바인	내용연수(5년)	_____														
	부품공급연한(9년)	_____														
	용자기준율(%)	60	55	50	45	40	35	30	25	25	25	25	25	25	25	25
기타 기종	내용연수(5~8년)	_____														
	부품공급연한(9~12년)	_____														
	용자기준율(%)	55	50	45	40	35	30	20	20	20	20	20	20	20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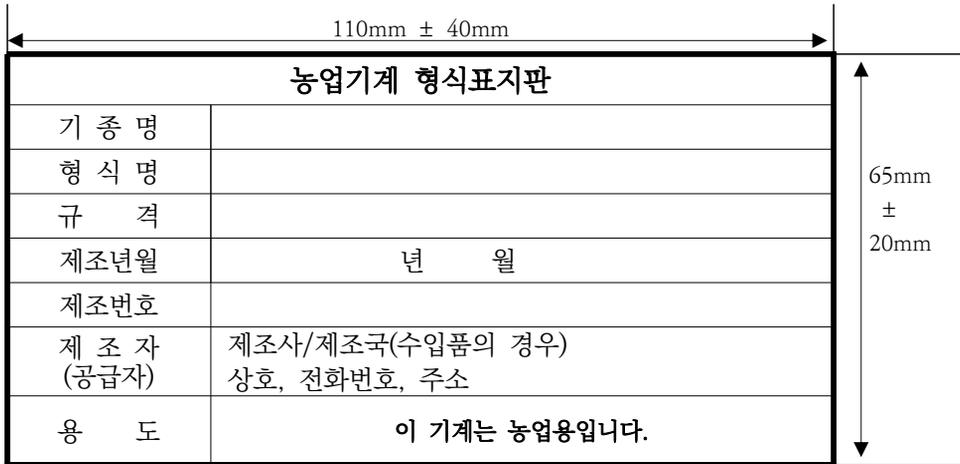
- 주) ① 사용연식 구분은 농업인이 구입한 일자(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기계는 지원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 예시) '23.1.1부터 '23.12.31동안 구입한 농기계는 2023년식으로 분류함
- ② 중고농업기계 용자지원한도액은 중고농업기계 매매가격에 80%를 곱한 금액과 해당년도 신규농기계 용자지원한도액[별표2](연식이 2022년 이전인 중고농기계는 최초 구입가격)에 용자기준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범위 이내에서 지원
- ③ 130마력이상 트랙터, 6조식이상 이앙기, 5조식이상 콤바인은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회사 해당규격과 같거나 이하 규격 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구입지원)에서 정한 연도별 용자지원 한도액 산정 기준모델의 가격
- ④ 기대별 중고농업기계 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농업기계와 중고농기계를 수입한 경우 용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별표 4]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사양

1. 본체 및 엔진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표지판 세부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2항에 따른 [별표 8의 2]를 적용함

① 본체에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표지판



가. 재료: 금속 재질

나.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다. 글씨체: 신명조

라.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과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16P, 굵은글씨), 이하 내용(14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마. 제조번호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여하는 것으로써 농업기계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표기(예시)”에서와 같이 첫째자리에 반드시 연도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조번호 표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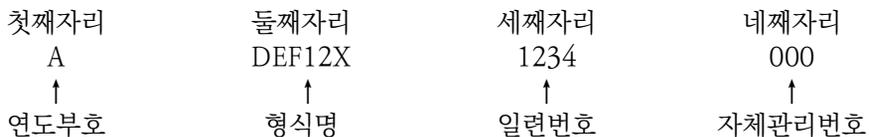
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 번호
------	-----	------	---------

\* 첫째자리: 연도부호(제3호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기)

둘째자리: 형식명(업체에서 관리하는 형식명 표기)

세째자리: 형식명별 해당연도에 제작한 순서(일련번호 표기)

네째자리: 업체에서 필요시 관리하는 자체 관리번호(없으면 미 표기)



② 엔진에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표지판

← 50mm ± 15mm →		70mm ± 25mm
<b>농업기계 형식표지판</b>		
용 도	농업용 엔진	
형 식 명		
정격출력/ 회전수	kW/rpm	
최대출력/ 회전수	kW/rpm	
제조번호		
제 조 자 (공급자)	제조사/제조국 (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 가. 재료: 금속 재질 또는 테프론스티커
- 나.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 다. 글씨체: 신명조
- 라.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14P, 굵은글씨), 이하 내용(12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및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 마. 제조번호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여하는 것으로써, 엔진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조번호에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포함됨을 의미한다.)

③ 농업용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의 제조번호는 본체를 분해하지 않고 육안 확인이 가능한 차대(새시)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새겨야 한다.

- 가. 새김(각자, 각인) 할 때는 제조번호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표시하되 처음과 끝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제조번호에는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 형식(모델)을 의미하는 형식명 및 제작순서를 의미하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제조연도는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조연도 부호는 다음과 같다.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2021	M	2032	2	2043	D	2054	R
2022	N	2033	3	2044	E	2055	S
2023	P	2034	4	2045	F	2056	T
2024	R	2035	5	2046	G	2057	V
2025	S	2036	6	2047	H	2058	W
2026	T	2037	7	2048	J	2059	X
2027	V	2038	8	2049	K	2060	Y
2028	W	2039	9	2050	L	2061	1
2029	X	2040	A	2051	M		
2030	Y	2041	B	2052	N		
2031	1	2042	C	2053	P		

주: 연도별 표기부호는 2061년 이후에 제작된 경우에는 2032년도에 표기된 2부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라. 단, 제조번호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제조번호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본다.

※ 비교: 농업용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의 형식표지판은 엔진 및 본체에 부착하며, 차대(새시)에 새기는 제조번호는 형식표지판에 표시된 제조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2.6.16.)시행시 부터 반영

2. 기종별 농업기계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종명	부착위치	기종명	부착위치
트랙터	차대 앞차축방향 또는 핸들지지대 중앙	이양기	운전석하단지지프레임 또는 밧데리 보호커버 또는 앞차축뒤차축사이 차대(가급적중앙)
콤바인	운전석, 하단 지지프레임		
플라우	주프레임 상단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베일러	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베일피복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무논정지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모우어	본체 연결 프레임 전면
로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뽐지지대 측면	사료배합기	배합 프레임 전면
심경로타리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사료작물 수확기	곡통 전면
논두렁조성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기타	눈에 잘 띄고 외부환경에 훼손되지 않는 위치

[별지1호 서식]

##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동의서 겸용)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회사 (공급회사)	농업기계 제조번호	수량 (대)	판매가격 (만원)	용자금 (만원)
부 속 장 어 류						
계						

\* 농업기계 제조번호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를 기재

\* 판매가격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라 표시한 가격을 기재

1.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용자금 수령을 다음 피 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농기계 공급자가 대리점, 제조업자, 수입업자, 위탁판매업자인 경우로서 농협경제지주와 해당 농기계 공급자 사이에 「농기계 대출금 중앙결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자취급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에 동의합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수입업체 :

대 표 :

(인)

공급조합(시중은행) :

조합장(시중은행장)

(인)

인수년 월 일

20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귀하

##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예시)

### 1. 중고농업기계의 표시

농업기계명	제조업체	구 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대)	금 액 (천원)	비 고
						부속작업기 포함여부 등 명시
계						

-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단, 농가간 거래시는 제외)

###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20 년 월 일 기대를 인수한다.

구 분	금 액	지불 일자	지불 방법
계약금(자부담)	금 천원	20 년 월 일	(현금, 기타)
중 도 금	금 천원	20 년 월 일	(현금, 용자금, 기타)
잔 금	금 천원	20 년 월 일	(현금, 용자금, 기타)
계	금 천원		

### 4.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및 무상수리

#### ①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사용 수리함, 사용 안함)

사용 부위	사용 부품명	수 량	특기 사항

※ 중고부품을 사용 수리한 경우에만 사용부위, 부품명, 수량등을 기재

#### ② “갑”은 “을”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무상수리 한다

- 무상수리 기간 :       개월(기대 인도일 부터)
- 무상수리의 범위 및 조건 :

## 5. 기 타

- ① (비정상적인 중고농업기계 공급에 따른 책임 및 피해보상방법 등 기재)
- ② (계약 위반시 처리방법 등 기재)
- ③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 6. 계약서

- ①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② 이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한 후 “갑”이 1통, “을”이 2통을 소지하며, “을”은 구입자금을 용자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를 용자취급기관에 확인한 후 1통을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을(매수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3호 서식]

##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 협약서

### 1. 공급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공급자	규격 (형식명)	수량 (대)	농업기계 제조번호	농기계가격 (천원)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2. 구입자 : ○○○

### 3. 이행계약 내용

공급자 본인은 구입자에게 상기 농업기계를 공급 후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에 4년을 더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공급자 : ○○○ 사후관리업소, 공급농협 ○○○ (인)

20    년    월    일

구입자    ○○○            귀 하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4호 서식]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확인서

업소명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제출필증 지정번호		제출필증 지정등급	
품질평가 결 과		품질평가 유효기간	

※ 품질평가 결과 [미흡(등급보류)]으로 판정된 업소는 3개월 이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그 결과를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기존의 품질평가 확인서는 무효처리되며, 품질평가 확인서 발급이 제한됨.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이사장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예산 (백만원)	322,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생산 소요 자재 구입과 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가격안정 도모, 우량 국산 농기계, 부품의 생산보급을 촉진</li> <li>○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 봉사를 촉진하고,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 예방 및 농기계 이용률 증진</li> </ul>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제7조							
사업 주요내용	○ 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용 시설·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용자							
사업 신청	○ 농기계 생산·사후관리지원 용자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농협은행에 신청 * 신청서류, 세부 신청절차 등은 해당 농협은행에 문의							
지원대상 선정	○ 용자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용자 시행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사업 시행지침 에 따름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22,000	222,000	422,000	322,000		
	○ 농기계 생산지원 (용 자)		200,000	200,000	400,000	300,000		
	○ 농기계 보관창고 (용 자)		1,000	1,000	1,000	1,000		
	○ 수리용 부품·장비 (용 자)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 현 주무관 이영동		044-201-1896 044-201-1897		
농협은행	정책지원자금 대출 담당			농협 담당자		(지역농협에 문의)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기계 및 농업기계 부품 제조업체
- 농기계 보관창고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파인 등) 보유 농가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 공동보관농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사후관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운영자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보관창고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운영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부품센터, 중고농기계 거래업소,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등
  - 수리용부품·장비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판매점, 사후관리업소, 중고농기계 거래업소
  - 수리·해체재활용시설 :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중고농기계 거래업소. 단,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는 장비구축비 지원 가능
- ※ 권역 부품센터는 2개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사후관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사후관리업소를 말함
-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사후관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5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며,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폐기처리하는 업소를 말함
- ※ 중고농기계 거래업소는 시·도에서 인가한 중고농기계 관련 협동조합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말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인이 구입 사용하는 농업기계 및 이에 소요되는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농기계 보관창고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파인 등) 보유 농가, 사후관리업소를 3년 이상 운영한 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및 부품판매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는 업력과 관계없이 2023. 7. 5.부터 시설·장비 구축지원 가능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부품판매업(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기계 생산용 자재 구입, 농업기계 및 부품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 자재 구입은 농기계 또는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 및 부품(외주 가공비 포함) 구입비만 인정
- 농기계 보관창고 : 보관창고 설치비
  -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에서 지원(1,000백만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 구입, 농기계 보고창고 설치, 농기계 수리용 시설·설비 자금,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시설·장비구축 자금 등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시설·장비구축 자금은 '23.7.5.일부터 지원

### 4. 사업규모 및 지원형태

- 농기계 생산지원 : 300,000백만원
  - 농기계생산 자재 구입 비축지원
    - 사업규모 : 275,000백만원
    - 지원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용자기간 : 1년 이내 상환(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설비지원
    - 사업규모 : 25,000백만원
    - 지원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용자기간 : 3년 거치 10년 상환

○ 농기계 보관창고(농업기계 사후관리지원사업으로 지원)

- 사업규모 : 1,000백만원

- 지원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용자기간 : 3년거치 10년 상환

-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을 받은 농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참고, '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사업규모 : 21,000백만원

- 지원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용자기간 : 1년거치 4년 상환

## 5. 지원한도액 및 용자시기

○ 농기계 생산지원

-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지원 :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자재 구입계획 금액의 90%이내(중견기업 이상 1,000억원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구입계획의 90%이내에서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으나 기업규모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받은 농업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시에는 기업규모별 지원한도액과 관계없이 그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지원규모 금액의 최대 20%이내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수출용 농업기계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시 중견기업 이상은 1,200억원, 중소기업은 120억원 이내 지원 가능

- 농기계 생산시설 설치 지원 : 기계설치비 30억원, 건축비 60억원까지 지원

· 다만, 중고농기계 수출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설매장, 전시장 등 설치비는 소요사업비의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중고농기계 수출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설매장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 설치지원 배정 후 잔액 발생시에는 생산원자재 구입 비축지원으로 변경 지원할 수 있음 (단, 사업 예산 및 설치도면 등이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농기계 보관창고

- 개인농가 : 15백만원 이내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50백만원 이내
- 사후관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 40백만원 이내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보관창고 : 40백만원 이내

※ 부지구입비는 제외, 건축도면 등이 첨부된 건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 수리용부품지원 : 최근 3년간 수리용 부품 구입 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수리용 부품 구입계획금액의 90% 이내

※ 농기계유통조합은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수리용 부품 구입 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구입 계획의 90% 이내에서 지원 규모를 정함. 단, 지원대상자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수리용부품 지원 한도액〉

농협 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사후관리업소		
			대형	중형	소형
2,000백만원	1,500	1,200	1,000	800	600

〈수리용장비 지원 한도액〉

사후관리업소			폐농기계처리장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대형	중형	소형		
1,000백만원	800	600	800	1,200

-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농업기계해체재활용 시설·장비지원 : 시설(건축)비 30억원, 장비설치비 15억원까지 지원

※ 농업기계운반용 차량(장비) 구입비 등 지원 가능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자금용도, 지원한도액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농협 금융부(이하 “농협은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하 “농기계유통조합”이라 함)에 시달

## 농협은행, 농기계조합 및 농기계유통조합

- 농기계 제조업체, 사후관리업소,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농업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 사후관리업소,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

- ‘농기계 생산 자재 비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 배정신청서”를 농기계조합에 제출
- ‘농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 “농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 배정 신청서”를 농기계조합에 제출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 서식]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자금 배정신청서”를 농기계유통조합에 제출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4호 서식]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시설자금 배정 신청서”를 농기계유통조합에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협은행(지역조합)

- 농협은행(지역조합)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의 내용, 신청방법 및 기한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 일선 지역농협은 농업종합자금 집행규칙에 따라 농기계 보관창고설치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

## 농기계조합 및 농기계유통조합

-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생산지원 사업을, 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은 농기계 사후관리 사업의 내용, 신청방법 및 기한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 농기계조합 이사장과 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별·지원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정한 후, 사업별·업체별 지원명세(용자 및 자부담 등 총사업비 내역, 시설자금의 경우 세부 사업계획서 등 일체서류 첨부 필수)를 농협은행장에게 통보
  - ※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용 부품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생산업체(부품센터)와 사후관리업소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배정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에 시달
-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별 지원한도액을 승인

#### 농협은행(지역조합)

- 지원대상 농업인, 사후관리업소 및 제조업체 등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지원

#### 농기계조합 및 농기계유통조합

-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 농기계조합은 [별표 1호] “농기계생산 자재구입 비축자금 배정기준”과 [별표 2호] “농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신청업체를 평가하여 60점미만의 신청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확정받은 후 대상업체에 통보
  -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서 첨부)를 농식품부에 보고

**농업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 사후관리업소,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

- 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농기계조합(생산지원), 농기계유통조합(사후관리지원)에 제출하여야 함

#### 4. 자금배정단계

**농기계조합 및 농기계유통조합**

- 지원대상자는 대출신청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대출관련정보(대출농협, 배정금액 등)를 농기계조합 또는 농기계유통조합에 통보하고,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은 대출신청 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대출관련 정보를 농협은행에 통보함
-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은 농협은행에 자금배정 통보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심의를 거쳐 재배정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농협은행(지역조합)**

- 농업종합자금 집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별로 자금을 배정(농기계생산지원 자금,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자금)
- 농협은행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실적 확인(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에서 통보한 사업계획서 등 일체서류에 근거한 추진 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징구)을 통해 기성고에 따라 지원(생산시설·설비자금 및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장비·시설자금에 한함)
- 농협은행은 매분기 지원대상자에 대한 대출취급내역을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 위탁기관의 사후관리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

### 농협은행(지역조합)

- 농협은행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농기계조합 이사장 또는 농기계 유통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부당대출 통보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 농기계조합, 농기계유통조합

- 농기계조합 이사장과 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은 사업추진 현황과 자금 집행현황 등을 연2회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 등을 파악, 익년도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자금 배정에 활용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 하여야 하며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종 판매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공급

## 《제재》

### 농협은행(지역농협)

- 지원 자금을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농기계조합, 농기계유통조합

- 농기계 생산지원 자금과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협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협은행에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재 요청 및 지원 제한 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6.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조합 이사장과 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은 사업추진현황과 자금 지원실적을 매 반기 익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함
- 농협은행은 자금별 집행실적을 익년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함

## IV

## 평가 및 환류

### 1. 사업평가

- 농기계조합과 농기계유통조합은 자금 지원실적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 매년 7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2. 환류단계

- 자금 지원 중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 V

##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23년과 동일
- 사업신청 : 농기계 제조(사후봉사)업체 → 농기계조합, 농기계유통조합  
→ 농식품부

###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3년도와 동일함

### 3.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시설자금은 '23.7.5.일부터 지원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는 시설 및 장비구축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사후 관리업소는 시설(건축비)비만 지원



[붙임 1]

# 농기계 생산자재 구입 비축자금 활용 계획서

## I. 기업현황

### 1.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 2. 공장현황

구 분	본 사				공 장			
부 지	㎡(    평)				㎡(    평)			
건 물	구 조				구 조			
	연면적	㎡(    평)			연면적	㎡(    평)		
소 유(V 체 크)	임차		자가		임차		자가	

### 3.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NO	기술권리명	권리내용	등록/발행일	발행처

※ 신기술인증(NET), KS, JIS, UL, 공산품 품질관리,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검, Q마크 등, 전, 열 형식승인, 외국 인증 등 기업이 획득 보유한 국내외 기술권리 기재, 별지첨부 가능

### 4. 종업원 현황

NO	정규직		비정규직(명)	합 계(명)
	사무직(명)	생산직(명)		

## II 사업계획

### 1. 농기계 또는 부품생산

기종명	부품명	자금용도	자재명
		○ 농기계 생산용( ) ○ 부품 생산용( )	

※ 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농기계명 또는 부품명 기재

### 2. 제품 생산 및 기대효과

연간생산 계획량		판매단가(예정) (vat별도)	시중가격	기대효과(O표시)
품목명	생산대수			
품목1	대	원	원	○ 생산단가 인하( )
품목2	대			○ 품질개선 기대( )
기타	대			○ 적기생산 기대( )

### 3. 주요자재(부품) 구입계획

구입 자재/부품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백만원)	비고
합계				

### 4. 배정신청

구입계획 품목	소요금액(계)	재원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비고
		금회지원(신청)	자부담	융자 등 기타	
자재( )/부품( )					

※ 자금 신청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90% 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 III. 제출서류

구분	접수시 제출서류명	요구시 제출서류명
1. 기본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 4. 최근 3개년도 분기별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 금계산서 합계표	1. 4대보험 가입서류(택1) 2. 농협신용조사서
2. 해당 제출서 류	1. 수출실적 자료(수출면장 등) 2. 기술권리증 사본 3. 정부포상자료 사본 4.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1. 장재 수입 관련 증명서류(인보이스, BL 등 사본) 2. 자재 구입과 관련한 증명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별지2호 서식】

<b>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 설비자금 배정 신청서</b>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 등 록	번호			사업자구분	개인	법인
	업종			업종분류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	041-411-2122	
				팩스		
	공장			전화		
				팩스		
주요생산품						
배정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항 목	소요금액	재원조달계획			
			금회(신청)	자부담	융자등 기타	
	기계설비비					
	공장건축비					
	합 계					
대출취급처		농협		( ) 지점		
<p>위와 같이 생산시설 · 설비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신청일 : 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업체명 : _____</p> <p style="margin-left: 200px;">대표자 : _____ (인)</p> <p style="margin-left: 100px;"><b>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b></p>						
붙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② 공장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li> <li>③ 최근 2개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수출면장</li> <li>④ 기술권리 소유권(특허권, 품질인증 등) 획득 증명서</li> <li>⑤ 건축물 : 설계도면 및 견적서 기계설비 : 카다로그 및 견적서</li> <li>⑥ 농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 활용계획서(첨부서식)</li> </ul>					

[붙임 2]

## 농기계 및 부품 생산 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 I. 기업현황

#### 1.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 2. 공장현황

구 분	본 사	공 장
부 지	㎡(    평)	㎡(    평)
건 물	구 조	구 조
	연면적	연면적
	㎡(    평)	㎡(    평)
3. 소유(○체크)	임차    자가	임차    자가

#### 3.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가. 공업소유권 등 기술권리 보유현황

NO	기술권리명	권리내용	등록/발행일	발 행 처

※ 신기술인증, KS, JIS, UL, 공산품 품질관리,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검, Q마크 등, 전, 열 형식승인, 외국 인증 등 기업이 획득 보유한 국내외 기술권리 기재, 별지첨부 가능

#####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격증 보유자		기술분야	기술등급	인증기관	자격증번호
현 직 위	성 명				

※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2) 기술등급 : 기술사, 기사1급, 2급,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 등으로 구분

## II 사업계획

### 1. 제품생산

주요제품명	용도	주요사양 및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수용( )</li> <li>○ 온실용(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양</li> <li>○ 제품의 자동화수준</li> <li>○ 생산라인의 자동화정도</li> </ul>

### 2. 제품개발 기대효과

동종업계현황					
수입의존도					
개발/수출단계	생산/판매 단계	항목	연월 표기	생산량	수출여부(V)
		최초생산			진행중
		최근생산			예정
	제품개발 단계	단계	체크	단계	체크
		○구상/컨셉 협의중		○제품 설계중	
		○시제품 제작중		○시제품 보완중	
○제품개발 완료			○시중 판매가능		
자금지원 후 생산계획 등	연간생산 계획	주요품목	생산계획	판매단가(예정)	시중단가
자금지원 기대효과	기대효과	항목	체크	항목	체크
		○수입품 국내제품 대체		○제품 품질개선/향상	
		○제품단가 인하/공급		○기타( )	

### 3. 건축(신, 개축) 또는 시설투자 계획

가. 건축물(공장 또는 중고농기계 상설매장 등) 건축(신, 개축)계획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구분(해당란 ○)		
현 공장현황		부지	면적	평	자가		
		건물	구조		평	임차	
			면적				
신(개)축 건축물(공장 또는 중고농기계 상설매장 등)		부지	면적	평	자가		
		건물	구조		평	임차	
			면적				
신(개)축 계획 또는 공장이전 등의 사유							

※ 취득 중에 있는(분양계획) 부지는 그 내용을 비교란에 표시하고 (계약일자, 계약내용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할 것, 계약서 반드시 첨부할 것

나. 시설투자 계획

기계설비명	시설용도(V)	설치형태(V)	주요사양	제 작 사
○ ○ ○	생산자동화	신설		
	품 질 향 상	증설		
	신제품개발	대체		
	공 정 개 선	기타		

다. 소요금액

구 분	수량(대)/평수	단 가(원)	소요금액(원)	비 고
기계설비	기계설비명			
	부대비용			
	합 계(A)			
공장건축	평			
	합 계(B)			
	총 합 계			

- ※ 1) 기계설비 및 공장건축비의 단가 및 소요금액은 견적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외국산 직수입 기계 및 장비는 CIF가격  
 3) 구입할 기계설비 등의 해당 카탈로그 및 해당 견적서 반드시 첨부

라. 배정신청

(단위 : 백만원, VAT별도)

구 분	소요금액	재 원 조 달 계 획			비 고
		금회지원(신청)	자 부 담	용자 등 기타	
기계설비					
건축비					
합 계					

마. 주요설비 보유현황

주요설비명	용 도	규 격	수 량	구입단가	설치날짜

### Ⅲ. 제출서류

구 분	접수시 제출서류명	요구시 제출서류명
1. 기본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서</li> <li>2.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li> <li>4. 건축물 위치도</li> <li>5. 건축도면 (설계도면 및 견적서)</li> <li>6. 기계설비 구입 견적서, 카다로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4대보험 가입서류(택1)</li> <li>2. 공장 등기부등본</li> <li>2. 공장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li> <li>3. 농협신용조사서</li> </ol>
2. 해당시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실적 자료(수출면장 등)</li> <li>2. 기술권리증 사본</li> <li>3. 기술자격증 사본</li> <li>4. 개발(생산)제품에 대한 특허 등을 신청중일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사 또는 공장의 부지가 기업 소유일 경우 해당토지의 등기부 등본(기업자산 으로 장부에 등재된 것에 한함)</li> </ol>





## II.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구입 지원자금 집행계획

### 1. 부품구입 계획

부품명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비 고
1. 2. 3. 4.	kg(개)	천원/kg(개)	백만원	
계				

※ 기재요령

- 1) 구입할 부품명의 구입 단가 및 소요금액은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2) 비고란에는 부품을 구입하는 분기(월)를 기록

### 2. 부품·장비 구입 자금 신청 금액

(단위 : 백만원)

부품명	소요금액	재 원 조 달 계 획			비 고
		금회지원 (신청)	자 부 담	용자 등 기타	
계					

### Ⅲ. 제출서류

구 분	접수시 제출서류명	요구시 제출서류명
1. 기본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	1. 4대보험 가입서류(택1) 2. 신청업체 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3. 농협신용조사서
2. 해당시 제출서류		1. 부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사본)



[붙임 2]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시설자금 활용 계획서

### I 업체 현황

#### 1.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 2. 업체의 입지

구 분	사 업 장
1. 부지	평
2. 건물	구 조 연건평                      평
3. 소유여부 - 소유구분 (해당란에 ○표)	임차 ( ) 자가 ( )

#### 3. 업체 시설 및 인력 현황

가. 시 설

시 설 명	면적(㎡)	비 고
- 작업장		
- 사무실		
- 야적장		
- 부품보관창고		

나. 인 력

기술자격증 보유자		기술분야	기술등급	인증기관	자격증번호
현 직 위	성 명				

※ 기재요령

-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 2) 기술등급 : 기술사, 기사1급, 2급,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 등으로 구분

## II. 사업계획

### 1. 건축물 건축(신, 개축) 또는 시설투자계획

#### 가. 건축물 건축(신, 개축)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소유구분 (해당란 ○)	비 고								
현재의 건축물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부지</td> <td style="width: 50%;">평</td> </tr> <tr> <td>○건물</td> <td></td> </tr> <tr> <td>- 구조</td> <td></td> </tr> <tr> <td>- 연건평</td> <td>평</td> </tr> </table>	○부지	평	○건물		- 구조		- 연건평	평	자가 (    ) 임차 (    )	
○부지	평											
○건물												
- 구조												
- 연건평	평											
신(개)축 계획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부지</td> <td style="width: 50%;">평</td> </tr> <tr> <td>○건물</td> <td></td> </tr> <tr> <td>- 구조</td> <td></td> </tr> <tr> <td>- 연건평</td> <td>평</td> </tr> </table>	○부지	평	○건물		- 구조		- 연건평	평	자가 (    ) 임차 (    )	
○부지	평											
○건물												
- 구조												
- 연건평	평											
신(개)축 계획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												

※ 취득 중에 있는(분양계획) 부지는 그 내용을 비교란에 표시하고 (계약일자, 계약내용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할 것, 계약서 반드시 첨부할 것

나. 장비구축계획(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에 한함)

장 비 명	용 도	주요사양	제 작 사

다. 소요금액

구 분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비 고
1. 사업장 건축비	대	원	원	
2. 장비 구축비	평			
계				

※ 기재요령

- 1) 사업장 구축비 및 장비 구축비의 단가 및 소요금액은 견적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2) 외국산 직수입 기계 및 장비는 CIF가격
- 3) 구입할 해당 카탈로그 및 해당 견적서 반드시 첨부

라. 금회 지원 신청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재 원 조 달 계 획			비 고
		금회지원 (신청)	자 부 담	용자 등 기타	
1. 건축비					
2. 장비구축비					
계					

\*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

마. 현재 주요 장비 보유현황(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에 한함)

주요 장비명	용 도	규 격	수 량	구입단가	구입날짜

### Ⅲ.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서류명	요구시 제출서류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서</li> <li>2.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농기계 사후관리 업소에 한함) ※ 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li> <li>4. 건축물 위치도</li> <li>5. 건축도면 (설계도면 및 견적서)</li> <li>6. 장비 구입 견적서, 카다로그(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소에 한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4대보험 가입서류(택1)</li> <li>2. 사업장 등기부등본</li> <li>3. 사업장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li> <li>4. 농협신용조사서</li> </ol>

【별표 1호】

농기계 생산자재구입 비축자금 배정기준																																			
항 목	배점		항목별 점수																																
	중견기업 이상	중소기업																																	
1. 기업형태	-	10	<table border="1"> <tr> <th>중견기업 이상</th> <th>점수</th> </tr> <tr> <td>법인</td> <td>-</td> </tr> <tr> <td>개인</td> <td>-</td> </tr> </table>	중견기업 이상	점수	법인	-	개인	-	<table border="1"> <tr> <th>중소기업</th> <th>점수</th> </tr> <tr> <td>법인</td> <td>10</td> </tr> <tr> <td>개인</td> <td>8</td> </tr> </table>	중소기업	점수	법인	10	개인	8																			
중견기업 이상	점수																																		
법인	-																																		
개인	-																																		
중소기업	점수																																		
법인	10																																		
개인	8																																		
2. 매출규모	45	35																																	
○ 국내매출액 (최근2년간 평균)	10	20	<table border="1"> <tr> <th>중견기업 이상</th> <th>점수</th> </tr> <tr> <td>2천억원 이상</td> <td>10</td> </tr> <tr> <td>2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td> <td>8</td> </tr> <tr> <td>1천억원 미만 5백억원 이상</td> <td>6</td> </tr> <tr> <td>5백억원 미만</td> <td>4</td> </tr> </table>	중견기업 이상	점수	2천억원 이상	10	2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8	1천억원 미만 5백억원 이상	6	5백억원 미만	4	<table border="1"> <tr> <th>중소기업</th> <th>점수</th> </tr> <tr> <td>1백억원 이상</td> <td>20</td> </tr> <tr> <td>1백억원 미만 5십억원 이상</td> <td>16</td> </tr> <tr> <td>5십억원 미만 1십억원 이상</td> <td>12</td> </tr> <tr> <td>1십억원 미만</td> <td>8</td> </tr> </table>	중소기업	점수	1백억원 이상	20	1백억원 미만 5십억원 이상	16	5십억원 미만 1십억원 이상	12	1십억원 미만	8											
중견기업 이상	점수																																		
2천억원 이상	10																																		
2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8																																		
1천억원 미만 5백억원 이상	6																																		
5백억원 미만	4																																		
중소기업	점수																																		
1백억원 이상	20																																		
1백억원 미만 5십억원 이상	16																																		
5십억원 미만 1십억원 이상	12																																		
1십억원 미만	8																																		
○ 수출실적	35	15	<table border="1"> <tr> <th>중견기업 이상</th> <th>점수</th> </tr> <tr> <td>2억불 이상</td> <td>35</td> </tr> <tr> <td>2억불 미만 1억불 이상</td> <td>28</td> </tr> <tr> <td>1억불 미만 1백만불 이상</td> <td>21</td> </tr> <tr> <td>1백만불 미만</td> <td>14</td> </tr> <tr> <td>실적없음</td> <td>0</td> </tr> </table>	중견기업 이상	점수	2억불 이상	35	2억불 미만 1억불 이상	28	1억불 미만 1백만불 이상	21	1백만불 미만	14	실적없음	0	<table border="1"> <tr> <th>중소기업</th> <th>점수</th> </tr> <tr> <td>100만불 이상</td> <td>15</td> </tr> <tr> <td>100만 미만 10만불 이상</td> <td>12</td> </tr> <tr> <td>10만불 미만 1만불 이상</td> <td>9</td> </tr> <tr> <td>1만불 미만</td> <td>6</td> </tr> <tr> <td>실적없음</td> <td>0</td> </tr> </table>	중소기업	점수	100만불 이상	15	100만 미만 10만불 이상	12	10만불 미만 1만불 이상	9	1만불 미만	6	실적없음	0							
중견기업 이상	점수																																		
2억불 이상	35																																		
2억불 미만 1억불 이상	28																																		
1억불 미만 1백만불 이상	21																																		
1백만불 미만	14																																		
실적없음	0																																		
중소기업	점수																																		
100만불 이상	15																																		
100만 미만 10만불 이상	12																																		
10만불 미만 1만불 이상	9																																		
1만불 미만	6																																		
실적없음	0																																		
3. 기업업력	-	20	<table border="1"> <tr> <th>중견기업 이상</th> <th>점수</th> </tr> <tr> <td>7년 이상</td> <td>-</td> </tr> <tr> <td>4년 이상 7년 미만</td> <td>-</td> </tr> <tr> <td>4년 미만</td> <td>-</td> </tr> </table>	중견기업 이상	점수	7년 이상	-	4년 이상 7년 미만	-	4년 미만	-	<table border="1"> <tr> <th>중소기업</th> <th>점수</th> </tr> <tr> <td>7년 이상</td> <td>20</td> </tr> <tr> <td>4년 이상 7년 미만</td> <td>16</td> </tr> <tr> <td>4년 미만</td> <td>12</td> </tr> </table>	중소기업	점수	7년 이상	20	4년 이상 7년 미만	16	4년 미만	12															
중견기업 이상	점수																																		
7년 이상	-																																		
4년 이상 7년 미만	-																																		
4년 미만	-																																		
중소기업	점수																																		
7년 이상	20																																		
4년 이상 7년 미만	16																																		
4년 미만	12																																		
□ 건전성/성장성	25	25																																	
① 총자산 증가율	4	4	<table border="1"> <tr> <th>①~④항목</th> <th>점수</th> <th>⑤항목</th> <th>점수</th> <th>⑥항목</th> <th>점수</th> </tr> <tr> <td>5% 초과</td> <td>4.0</td> <td>5% 초과</td> <td>5.0</td> <td>5% 미만</td> <td>4.0</td> </tr> <tr> <td>± 5%</td> <td>3.2</td> <td>± 5%</td> <td>4.0</td> <td>5%이상 100% 미만</td> <td>3.2</td> </tr> <tr> <td>5% 미만</td> <td>2.4</td> <td>5% 미만</td> <td>3.0</td> <td>100% 이상 200% 미만</td> <td>2.4</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200% 이상</td> <td>1.6</td> </tr> </table>	①~④항목	점수	⑤항목	점수	⑥항목	점수	5% 초과	4.0	5% 초과	5.0	5% 미만	4.0	± 5%	3.2	± 5%	4.0	5%이상 100% 미만	3.2	5% 미만	2.4	5% 미만	3.0	100% 이상 200% 미만	2.4	-	-	-	-	200% 이상	1.6		
①~④항목	점수	⑤항목		점수	⑥항목	점수																													
5% 초과	4.0	5% 초과		5.0	5% 미만	4.0																													
± 5%	3.2	± 5%		4.0	5%이상 100% 미만	3.2																													
5% 미만	2.4	5% 미만		3.0	100% 이상 200% 미만	2.4																													
-	-	-		-	200% 이상	1.6																													
② 매출액 증가율	4	4																																	
③ 매출액 순수익율	4	4																																	
④ 자기자본 비율	4	4																																	
⑤ 수출액 증가율	5	5																																	
⑥ 부채비율	4	4																																	
			※ 항목별 업종평균 대비 기준이며, 부채비율 미산정시 점수 없음.																																
4. 기술개발투자	30	5	<table border="1"> <tr> <th>중견기업 이상</th> <th>점수</th> </tr> <tr> <td>100억원 이상</td> <td>30</td> </tr> <tr> <td>100억원 미만 ~ 50억원</td> <td>24</td> </tr> <tr> <td>50억원 미만 ~ 10억원</td> <td>18</td> </tr> <tr> <td>10억원 미만 ~ 1억원</td> <td>12</td> </tr> <tr> <td>1억원 미만</td> <td>6</td> </tr> </table>	중견기업 이상	점수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 미만 ~ 50억원	24	50억원 미만 ~ 10억원	18	10억원 미만 ~ 1억원	12	1억원 미만	6	<table border="1"> <tr> <th>중소기업</th> <th>점수</th> </tr> <tr> <td>100억원 이상</td> <td>5</td> </tr> <tr> <td>100억원 미만 ~ 50억원</td> <td>4</td> </tr> <tr> <td>50억원 미만 ~ 10억원</td> <td>3</td> </tr> <tr> <td>10억원 미만 ~ 1억원</td> <td>2</td> </tr> <tr> <td>1억원 미만</td> <td>1</td> </tr> </table>	중소기업	점수	100억원 이상	5	100억원 미만 ~ 50억원	4	50억원 미만 ~ 10억원	3	10억원 미만 ~ 1억원	2	1억원 미만	1							
중견기업 이상	점수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 미만 ~ 50억원	24																																		
50억원 미만 ~ 10억원	18																																		
10억원 미만 ~ 1억원	12																																		
1억원 미만	6																																		
중소기업	점수																																		
100억원 이상	5																																		
100억원 미만 ~ 50억원	4																																		
50억원 미만 ~ 10억원	3																																		
10억원 미만 ~ 1억원	2																																		
1억원 미만	1																																		
			※ 기술개발투자 실적이 없으면 점수 없음.																																
5. 지식재산권/수상 실적	-	5	1건당 10점, 최대 100점(지난 10년간 자료) ※ 수상은 장관급 이상 표창																																
합 계	100	100																																	
6. 가점	10	10	<table border="1"> <tr> <th>가점 항목</th> <th>점수</th> <th>비 고</th> </tr> <tr> <td>소기업 배려</td> <td>10</td> <td>매출액 10억원 미만</td> </tr> <tr> <td>순회수리봉사 참가</td> <td>10</td> <td>해당기업 적용</td> </tr> </table>	가점 항목	점수	비 고	소기업 배려	10	매출액 10억원 미만	순회수리봉사 참가	10	해당기업 적용																							
가점 항목	점수	비 고																																	
소기업 배려	10	매출액 10억원 미만																																	
순회수리봉사 참가	10	해당기업 적용																																	

【별표 2호】

농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 배정기준			
항 목	배 점	항목별 점수	
1. 기업형태	10	구분	점수
		법인	10
		개인	8
2. 재무능력	20		
○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10	부채비율 기준(업종평균 대비)	
		업종평균보다 5% 미만	10
		업종평균 대비 5% 이상 100% 미만	8
		업종평균 대비 100% 이상 200% 미만	6
		업종평균 대비 200% 이상	4
		※ 부채비율 미산정시 점수없음.	
○ 자본잠식 여부 (자본총계/자본금)	10	자본잠식여부 기준(업종평균 대비)	
		0.5 미만(50%)	10
		0.5 이상 ~ 1.0 미만(50 이상 ~ 100% 미만)	8
		1.0 이상 ~ 2.0 미만(100 이상 ~ 200% 미만)	6
		2.0 이상 ~ 3.0 미만(200 이상 ~ 300% 미만)	4
		3.0 이상(300% 이상)	3
		※ 자본잠식 여부 미산정시 점수없음.	
3. 기업능력	45		
○ 사업기간	10	사업기간	
		7년 이상	10
		4년 이상 7년 이하	8
		4년 이하	6
○ 기업매출	10	매 출 액	
		50억원 이상	10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8
		10억원 이하	6
○ 기술개발(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	15	기술개발	
		5% 초과	10
		± 5%	8
		5% 미만	6
		※기술개발 투자실적이 없으면 점수없음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공업소유권 획득 현황)	10	1건당 10점, 최고한도 100점 -발명특허,KS,JIS,실용신안,디자인의장등록,품질관리등급,ISO,신기술 등	
4. 경영능력(성장성 + 수익성)	25		
①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 100-100)	5	①~⑤ 항목별 기준	점수
② 매출액 증가율(당기말총매출액/전기말총매출액 × 100-100)	5		
③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5		
④ 총자본 순수익율(당기순이익/총자본 × 100)	5		
⑤ 총수출액 증가율(당기말수출액/전기말수출액 × 100-100)	5		
		※항목 미산정시 점수없음.	
합 계		100	
5. 가점	10		
○ 공장부지 확보 여부	5	공장부지 확보 증빙자료 제출	
○ 농기계 매출 집중도	5	70% 이상(집중도=농기계 매출액/총매출액 × 100)	

※ 단,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우대지원 (수출액 증빙자료 제출)

# 농기계임대 사업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지자체(시·군·구)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임대농기계
  -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경운정지,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 '24년 예산 : 61,8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 신청

- 시·도를 통해 시·군·구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신청서를 제출

### □ 대상자 선정

-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 농기계 임대 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 임대농기계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김남진 주무관 강민우	044-201-1840 044-201-1841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농기계 담당자	(해당 지자체 문의)

##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 1. 사업대상자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가능
  -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할 수 있음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 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우선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산림청 소속기관, 관내 산림부서 등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대행을 위해 파쇄기 임대 요청 시 임대 지원 가능
  - \* 다만, 관내 농업인의 파쇄기 사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지원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 4. 지원자금의 용도

##### ○ 임대농기계 구입

- 발농사용 농기계 및 발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발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가능
- 발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40%이상 구입하여야 함
  -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여성농업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포함(부속작업기 포함)
  - \* 관리기,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등 포함)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편이를 위한 편이장비 구입 가능
  - \* 편이장비는 이장 등 마을대표를 통한 다수인 임차 때 연명 계약 가능

#####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하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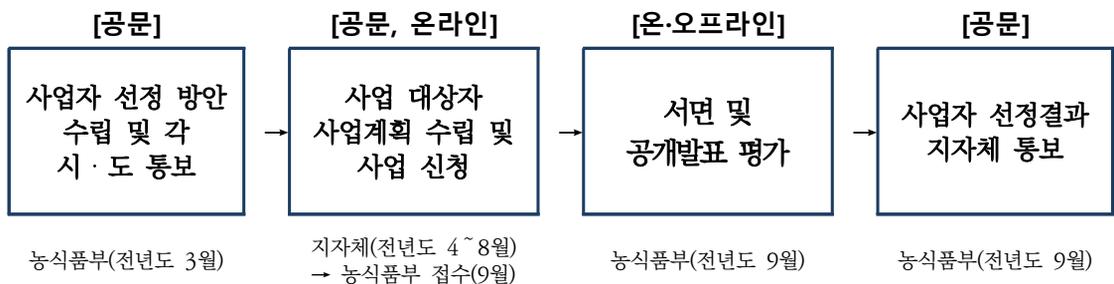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5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900백만원 이내/개소
  -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전년도 8월말 기준)된 지자체에 우선 지원
  - \* 편익장비 지원 시 사업단가는 50백만원 이내/개소 적용
- 사업비 : 13,5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③ 증설·이전
  -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가능
  -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 증설·이전 : 기존 임대사업소의 확장 또는 인근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 설치
- 사업대상자 선정은 다음의 선정 절차를 따름

### ※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가. 사업진행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3월 중 각 시·도로 사업자 선정 방안을 통보하고, 각 시·도는 각 시·군에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 실시(8월)
- 농식품부는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자체 통보(9월)

## 나. 사업자 선정단계

### 1) 사업자 선정단계 개요

####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단계별 종합평가 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1단계 : 서면평가 >

#### ○ 사업신청자의 관련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검토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평가내용 : 기본 구비 서류(토지대장 등)제출 유무,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검토),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 조치내용 : 평가내용을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 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 2단계 : 발표평가 >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평가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참석대상 : 해당 지자체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여건, 부지·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연내 예산 집행 계획, 임대사업 참여 등 종합평가
- 조치내용 : 발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 순위 선정

### 2)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 차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주요 발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 ‘주산지일관기계화’ 旣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육묘·파종부터 수확·저장까지 전 과정 일관 기계화를 위한 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음

[작물별 · 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업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발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 4. 지원자금의 용도

#####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마늘·양파 등 주요 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농기계,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상자, 육묘시설, 톨백 등), 생산량 조사 지원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주산지 일관기계화
- 사업량 : 87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 우수모델 육성 참여 지자체의 발작물 기계화 현황, 현장 수요,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 30,9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 우수모델 육성 사업 참여 지자체는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

### ③ 노후농기계 대체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 \* 직전 2개년도 연속하여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시·도별 신청상황에 따라 차순위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조정 가능
  -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실적 및 임대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평가결과 최종 순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지원자금의 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발농사용 농기계와 발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팩트인은 구입 가능
- 자율주행농기계 시범 보급 참여 지자체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구입 가능
-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파쇄기에 한정하여 구입 가능

####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53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사업비 : 17,48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9~10월)
  - \* 지자체 부지조성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내역사업(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경우 2년전 사업수요 조사 및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포기시 이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도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군·구 가내시 통보(9월~10월)
  - \* 시·도는 가내시 사업 신청시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

####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분야 관련 심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 사업계획 수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활용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계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상시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
  -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등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하며, 사업 신청을 위한 1~2개월 미만의 단기 조사 금지
  -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등을 위한 잔가지 파쇄기는 수요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기종으로 선정 가능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 사업신청시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2.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 지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 및 실행률 등을 감안하여 사도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선정·통보함  
(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를 확인한 경우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 대상자 변경 포함)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의 경우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시·군·구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99	1000~
정규직	5	8	9	10	10	11	13	14	14	15
계약직	2	2	3	3	4	4	4	4	5	5
계	7	10	12	13	14	15	17	18	19	20

##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 시·도

- 시·도는 시·군·구가 변경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시·도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
- 시·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지방비 추가 편성 포함)하는 경우 자체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하여 사업추진 가능
  - \* 농기계 세부 구입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관리시설 구축비 일부 변경 등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임대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 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점검결과 당초 계획보다 기계화에 소극적인 경우 해당 공동경영체조직에 대해 임대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장기임대로 구입지원 받은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작목반 해체, 계약 파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기임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재계약을 위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임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단기임대로 전환 가능

-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최대 50% 이내)을 시행할 수 있음

### < 임대료 감면 규정(예시) >

제00조(임대료의 감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최대 50% 이내)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렛을 제작·배포 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 사업소」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운용을 위한 소모품 및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임대료 징수 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고지서 발급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임차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
-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차 농기계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권고)
  - \* 고의·과실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부과 금지
- 임대기간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면세유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FAX 등으로 면세유 배정 신청 서류를 송부할 수 있음

## 2.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3.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 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 · 군수

-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종별 내구연수</li> <li>-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li> <li>○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li> <li>○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li> <li>○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li> </ul>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임대농기계 (트랙터·콤바인)는 불용처리시 폐기하여야 함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2. 성과측정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 3. 평가 및 환류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임대사업 운영 현황(임대농기계 이용일수), 조례 운영 현황(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반영 등) 등을 고려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명)	비율 (%)	구입계 획 (대)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비고(사유)
					보유 대수 (대)	이용농 가수 (명)	연간임 대일수 (일)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65		3	5	80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 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 구입가격]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 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 ○ ○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 ○ ○ (인)

##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 ×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 $[(33,000\text{원}+67,000\text{원})/2=50,000\text{원}]$ 임
  -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 실적을 합산)	시·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4.1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 농기계 임대사업 면세유 신청서

임대자	기관명	000 농업기술센터	주소			
	전화번호	- -				
임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				
임대농업기계	농기계명		유종	휘발유	경유	
	형식명		마력			
	기대번호 (관리번호)		비고			
임대현황	임대기간	202 . . . ~ 202 . . .	임대일수	일		
작업현황	영농구분		작업장 위치			
	작업내용					
	총영농면적	ha	작업시간	시간		
	금회작업면적	ha				
추가배정	요청량		사유	농기계 단기임대로 인한 면세유 배정 요청		
<작성방법> ▶ 영농구분 : 수도작, 밭작물, 과수, 시설채소, 화훼, 축산, 기타 ▶ 작업명 : 경운, 정지, 이앙, 제조, 수확, 난방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확인(신고)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임대자 :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

임차자 : (인)

\_\_\_\_\_ 조합장 귀하

\* 주말 및 공휴일 임대의 경우 관리 농협 여건 등으로 임대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배정기준 및 유보량 등으로 '추가 배정 요청량'과 '실 추가 배정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참 고 자 료





# 보증제도 안내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이행보증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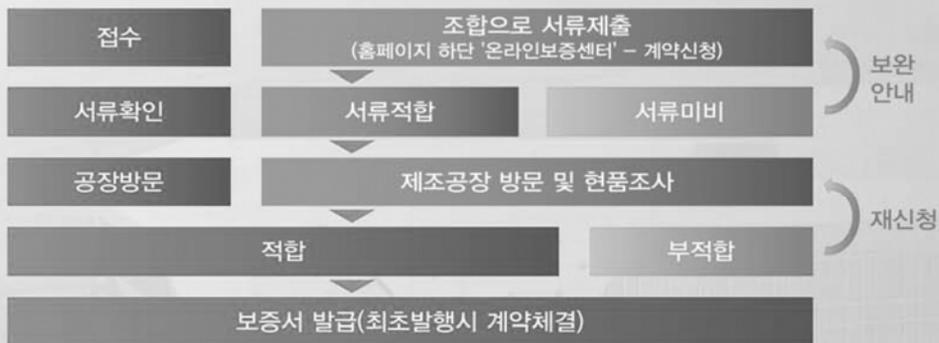
우량 농기계의 공급촉진과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대농민 피해예방 및 기계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농기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

### ○ 보증서 종류

구 분	사후관리이행보증서	품질보증서	사후관리보증서	공급 및 사후관리보증서 (조사료기계장비)
사업 내용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등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보증 내용	보증제품의 A/S 보증	보증제품의 A/S보증	보증제품의 A/S 보증	보증제품의 공급 및 사후 관리 확인
사용처	정부융자지원대상기종 확인용	보조사업 확인용	보조사업 확인용	조사료기계장비 확인용
대상 기종	정부융자지원대상기종	히트펌프, 관수관비기, 환풍기, 파종기 등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및 알루미늄스크린, 동력개폐기 등	농업용트랙터, 로타베이터, 농업용로더, 사료배합기, 결속기 등

- ※ 1. 보증서 발급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2. 조합 홈페이지(www.kamico.or.kr) 상단 '품질보증'-'보증기준' 참고

### ○ 보증서 발급 신청절차



- ※ 서류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는 약 14일(근무일기준)이내에 진행되며, 부적합의 경우 20일내로 제조업체는 조합으로 보증서 재신청

### ○ 문의사항

-스마트농업진흥팀 T.041-411-2153-5

**KAMICO**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KOREA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이행보증 증서 서식

### 품질보증서

1. 제조 업체명 :
2. 보증서 번호 :
3. 보증 기간 : 보증기대 판매일로부터 엔진(모터, 배터리 제외) 및 동력전달장치 2년, 그 외 장치 1년간
4. 판매 일자 :    년    월    일
5. 기 종 명 세

기 종 명	형 식 명	수 량	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제조번호 :

※ 비고 :

#### 6. 품질보증범위 :

소비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이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 당조합이 「농기자재 시험·검사 및 보증 규약」 제8조(보증 및 사후봉사기간)에 의거 구입후 1년 이내는 무상수리, 1년 이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는 유상수리 할 것을 보증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함

- ①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 ②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예 :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구조의 임의변경 및 수리, 용도의 사용 등 기타)로 인한 경우.
- ③ 제품의 수리보증 이외 고장 및 수리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조합이 보증하지 않음
- ④ 설치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 ① 이 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서 사용 시 보증기대 판매일자를 기재하여 사용.

(판매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보증효력이 없음)

- ② 이 증서는 사본 및 금융기관대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품질보증을 함.

년    월    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 변 조 방 지 마 크

# 사후관리이행보증서

## (금융기관 대출용)

1. 제조 업체명 :
2. 보증서 번호 :
3. 보증 기간 : 보증기대 판매일로부터 엔진(모터, 배터리 제외) 및 동력전달장치 2년,  
그 외 장치 1년간
4. 판매 일자 :     년     월     일
5. 기 종 명 세 : ( 상품코드 :             )

기 종 명	형 식 명	수 량	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제조번호 :

※ 비고 :

### 6. 사후관리이행보증범위

소비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이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 당조합이 「농기자재 시험·검사 및 보증 규약」 제8조(보증 및 사후봉사기간)에 의거 구입후 1년 이내는 무상수리, 1년 이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는 유상수리 할 것을 보증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함

- ① 천재지변·전쟁·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 ②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예 :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구조의 임의변경 및 수리, 용도의 사용 등 기타)로 인한 경우.
- ③ 제품의 수리보증 이외 고장 및 수리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조합이 보증하지 않음
- ④ 설치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 ① 이 증서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지원을 받을 경우만 보증효력 있음.

② 이 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서 사용 시 보증기대 판매일자를 기재하여 사용.

(판매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보증효력이 없음)

③ 이 증서는 사본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사후관리이행보증을 함.

년     월     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 변 조 방 지 마 크

## 2024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발췌본) 1권

발행일 : 2024년 1월 2일  
발행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발행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전화 : 041-411-2100  
팩스 : 041-555-4491